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 토론회

일시 : 2009년 10월 29일 (목) 14:00~17:30

장소 :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후원 : (재) 여의도연구소

본 정책토론회 자료는 최종 연구결과가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

한국가족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사회재
생산 문제: 부부노동가족을 중심으로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가족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사회재생산 문제: 부부노동가족을 중심으로

1. 부부노동가족의 보편화

부부노동가족의 보편화는 한편으로 경제적 궁핍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충적 수입 확보 노력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나, 거시적·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구미 선진국들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오히려 경제발전, 민주화, 복지국가 확립 등의 집합적 목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전자와 후자의 측면이 동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 가구수 및 비중

	전체 가구수	가구수				전체가구대비 비중			
		WCF (부부노동 가족)	MBF (남성생계 부양가족)	FBF (여성생계 부양가족)	Non-working couple (비노동)	WCF	MBF	FBF	Non- working couple
1995	9,525,593	3,180,380	5,299,428	218,003	827,760	0.33	0.56	0.02	0.09
2000	10,108,896	3,574,371	4,934,820	376,035	1,223,150	0.35	0.49	0.04	0.12
2005	10,314,822	3,633,275	4,776,333	407,571	1,496,348	0.35	0.46	0.04	0.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표 2〉 성별 연령구간별 비혼율

(단위: %)

	여성		남성	
	25~29세	30~34세	25~29세	30~34세
1995	29.6	6.7	64.4	19.4
2000	40.1	10.5	71.0	28.1
2005	59.1	19.0	81.8	4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 가구주 부부의 직업별 경제활동상태

	맞벌이-부인 (%)		맞벌이-남편 (%)		홀벌이-남편 (%)		홀벌이-부인 (%)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2000	2005
가구수	3,574	3,633	3,574	3,633	4,935	4,776	376	4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7.1	1.2	1.1	5.0	11.0	7.6	1.5	1.2
전문가	6.5	10.3	8.4	7.2	9.2	9.1	5.5	6.4
기술공 및 준전문가	6.5	6.1	4.4	7.8	10.3	10.9	3.0	4.2
사무종사자	9.5	15.3	11.3	12.9	13.5	16.7	5.6	7.8
서비스종사자	6.8	15.0	15.2	6.7	4.2	4.3	24.5	22.8
판매종사자	11.9	15.6	19.2	1.7	8.7	8.1	19.5	16.4
농업·임업 및 어업·수렵종사자	23.1	18.8	22.2	19.7	3.7	3.3	6.3	7.4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10.9	5.3	6.4	11.5	14.2	14.4	8.9	7.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2	6.3	5.5	11.9	16.4	16.5	7.1	8.3
단순노무종사자	6.2	5.8	6.4	6.1	7.6	7.9	18.0	17.9
기타	0.3	0.0	0.0	0.4	1.1	1.1	0.0	0.0
직업미상	-	0.2		0.2		0.2		0.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표 4〉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경험 유무

(단위: %, 명)

	전혀 없다	드물게 있었다	몇 번 있었다	빈번하게 있었다	전체
교육정도	80.6(944)	13.6(159)	4.2(49)	1.6(19)	100.0(1,171)
초졸미만	81.3	13.4	3.7	1.5	100.0
중졸	80.9	11.3	5.7	2.1	100.0
고졸	79.6	14.4	4.9	1.1	100.0
초대졸	83.3	10.6	3.9	2.2	100.0
대졸이상	77.3	17.8	3.1	1.8	100.0
종사상지위	80.6(927)	13.6(155)	4.2(48)	1.6(19)	100.0(1,149)
상용고	81.5	13.3	3.8	1.5	100.0
임시고	79.3	14.9	4.3	1.6	100.0
일용고	75.6	12.8	8.1	3.5	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III-10.

[그림 1] 남성생계부양가족(MBF) 시대에서 부부노동가족(WCF)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

<u>MBF 시대</u>	<u>WCF 시대</u>
만혼인구, 영구독신인구	만혼인구, 영구독신인구
남성생계부양가족 (Male breadwinner families; MBF)	남성생계부양가족 (Male breadwinner families; MBF)
여성생계부양가족 (Female breadwinner families; FBF)	여성생계부양가족 (Female breadwinner families; FBF)
부부노동가족 (Working couple families; WCF-A, B, C, D)	WCF-A
	WCF-B
	WCF-C
	WCF-D

- WCF-A: Disguised working couple families
(저소득층에서 주부 노동으로 남편의 불안정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
- WCF-B: Self-employed working couple families (부부 공동노동 자영업 종사)
- WCF-C: Permanent couple-working families
(저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에 종사하여 부부가 영구적으로 동시 노동에 종사하여야 생계가 유지)
- WCF-D: Professional/managerial working wives and comparably earning husbands
(전문 · 관리직 종사하는 기혼여성과 이에 준하는 경제지위를 가진 배우자)

2. 가족생계소득 안정화

부부노동가족들이 이전에는 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남성생계부양가족들보다 평균적으로 빈곤했지만 앞으로 전개될 경제·사회 환경에서 반드시 그러한 차이가 유지될 근거는 없다. 실제 최근 조사들에 따르면, 부부노동가족들의 평균소득이 남성생계부양가족들의 평균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노동빈곤층(working poor)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처럼, 빈곤한 부부노동가족들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한 경제(노동)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표 5〉 맞벌이와 남편외벌이 부부의 종사상지위

(단위: %, 명)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남편		부인		남편	
전체	100.0	1,109	100.0	1,108	100.0	1,495
고용주	1.9	21	0.2	2	4.7	71
자영업자	52.8	585	15.0	166	30.2	452
가족종사자	0.7	8	37.5	416	0.1	1
상용고	38.2	424	33.3	369	56.7	848
임시 및 일용고	6.4	71	14.0	155	8.2	123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II-27.

〈표 6〉 맞벌이부부 상호간 종사상지위분포

(단위: 명, %)

		부인의 경제활동상태				남편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남편의 경제활동 상태	고용주	0(0.0)	3(0.3)	14(1.2)	7(0.6)	24(2.1)
	자영업자	0(0.0)	63(5.5)	425(37.2)	122(10.7)	610(53.3)
	가족종사자	0(0.0)	8(0.7)	0(0.0)	0(0.0)	8(0.7)
	임금근로자	2(0.2)	92(8.0)	8(0.7)	400(35.0)	502(43.9)
부인전체		2(0.2)	166(14.5)	447(39.1)	529(46.2)	1,144(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II-28.

〈표 7〉 여성취업에 대한 남편의 찬성이유

(단위: %)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	아내의 의사를 존중	아내의 자질개발을 희망	기타	전체
전체	64.8	12.5	13.1	9.2	0.3	100.0
동부	61.5	13.5	15.1	9.5	0.4	100.0
읍면부	76.3	9.2	6.1	8.4	0.0	100.0
가구주	83.6	5.5	5.5	5.5	0.0	100.0
비가구주	64.2	12.7	13.4	9.4	0.3	100.0
15-24세	55.0	10.0	25.0	10.0	0.0	100.0
25-29세	47.1	19.1	20.6	13.2	0.0	100.0
30-34세	48.1	15.5	23.0	13.1	0.3	100.0
35-39세	59.9	11.0	17.0	11.7	0.4	100.0
40-49세	70.0	11.7	9.8	8.2	0.3	100.0
50-59세	75.8	10.3	7.0	6.4	0.6	100.0
60세이상	84.3	11.8	2.0	2.0	0.0	100.0
중졸이하	86.2	8.1	3.3	2.2	0.1	100.0
고졸	63.8	14.4	13.6	7.7	0.4	100.0
대졸이상	30.0	16.5	29.0	23.9	0.5	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V-11.

3. 부부노동가족과 사회재생산의 교란

그동안의 이른바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즉 육아, 가사(요리, 청소, 세탁 등),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보충적 학습지도(지휘), 병간호, 노인보호까지도 여성들의 헌신에 집중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부부노동가족의 보편화는 이러한 여성의존적 사회재생산 체계의 근본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부부노동가족의 방치된 아동이 화재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 8〉 기혼여성 취업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단위: %)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전체	4.6	17.4	27.4	40.7	10.0	100.0
동부	4.0	16.8	26.4	42.6	10.2	100.0
읍면부	6.3	18.8	30.1	35.3	9.4	100.0
가구주	7.9	20.2	26.2	36.3	9.4	100.0
비가구주	3.9	16.7	27.6	41.7	10.1	100.0
25-29세	1.7	24.1	24.1	37.9	12.1	100.0
30-34세	1.1	10.2	16.5	50.6	21.6	100.0
35-39세	1.7	12.1	25.5	48.1	12.6	100.0
40-49세	4.5	18.4	29.3	39.6	8.2	100.0
50-59세	9.4	20.6	29.1	35.9	5.0	100.0
60세이상	4.7	21.1	33.6	32.8	7.8	100.0
중졸이하	6.5	19.0	30.7	36.6	7.3	100.0
고졸	2.6	16.2	25.0	43.9	12.2	100.0
대졸이상	3.4	15.1	22.8	45.7	12.9	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V-1.

〈표 9〉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6세 미만 자녀 보육자

(단위: %)

	보육 시설	시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본인	남편	다른 자녀	방치	과출부 가정부	기타	전체
전체	39.2	3.5	4.4	1.0	57.4	0.3	0.1	4.2	0.1	0.4	100.0
실업자	34.6	0.0	3.8	0.0	65.4	0.0	0.0	3.8	0.0	0.0	100.0
비경제활동자	32.9	0.6	0.4	0.0	71.0	0.0	0.0	5.0	0.2	0.7	100.0
취업자	56.4	11.6	15.3	3.7	20.1	1.1	0.5	2.1	1.6	1.6	100.0
자영업자	45.8	16.7	12.5	0.0	0.0	0.0	0.0	4.2	0.0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56.4	10.3	2.6	2.6	35.9	0.0	0.0	5.1	0.0	0.0	100.0
전일제	56.8	13.6	22.7	6.8	5.7	1.1	1.1	0.0	3.4	3.4	100.0
시간제	66.7	3.0	15.2	0.0	18.2	3.0	0.0	3.0	0.0	0.0	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V-4.

4. 산업화, 여성지위, 사회재생산: 전업주부 지위의 규범화

지난 1960-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인구의 급속한 도시 산업노동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연령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혼인 이전 기간에 노동자 지위를 유지하다 혼인을 전후로 대다수 퇴직하고 전업주부로서 사회재생산 노동에 집중하다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 (즉 사회재생산 노동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든 이후) 가계소득 보충을 위해 다양한 불안정 임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여성의 집단적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재생산 체계를 재편하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한편으로 ‘젊은 여성’에 국한된 정규노동시장 참여와 다른 한편으로 ‘전업주부’ 지위를 범사회적으로 규범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제6장, “성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표 10〉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단위: %, 명)

	최종학교 졸업직후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출산 직전	첫출산 직후	막내 출산전	막내 출산후	막내 입학전	막내 입학후
동부									
취업자수	100.0 (1,114)	100.0 (1,234)	100.0 (517)	100.0 (705)	100.0 (431)	100.0 (343)	100.0 (351)	100.0 (505)	100.0 (512)
자영업자	1.7	4.7	12.8	6.8	15.3	15.2	16.2	20.4	19.1
무급가족	4.8	5.6	21.3	12.6	26.2	31.2	36.2	32.7	31.4
상용고	88.0	83.1	57.4	73.3	50.3	44.6	37.6	31.7	32.0
임시일고	5.5	6.5	8.5	7.2	8.1	9.0	10.0	15.2	17.4
읍면부									
취업자수	100.0 (242)	100.0 (283)	100.0 (266)	100.0 (281)	100.0 (246)	100.0 (234)	100.0 (264)	100.0 (73)	100.0 (308)
자영업자	2.9	6.0	12.0	9.3	11.0	12.4	11.7	13.8	13.3
무급가족	26.0	24.4	73.7	62.3	79.3	80.3	82.6	72.8	70.1
상용고	66.1	62.5	10.2	21.7	5.3	3.4	1.9	6.9	9.1
임시일고	5.0	7.1	4.1	6.8	4.5	3.8	3.8	6.6	7.5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2), 표 VI-5.

〈표 11〉 여성 취업자의 희망 취업지속기간 분포

(단위: %, 명)

	당장 그만 둔다	결혼할 때까지	자녀 출산때 까지	경제여건 좋아지면	늙어서 할 수 없을 때	쉬고 싶을 때 까지	기타	전체
전체	1.4 (27)	4.4 (86)	1.5 (30)	28.5 (557)	33.2 (650)	28.6 (560)	2.4 (47)	100.0 (1,957)
동부	1.7	5	1.7	28.3	31.3	29.2	2.9	100.0 (1,508)
읍면부	0.4	3	0.9	29.0	39.6	26.5	0.7	100.0 (449)
초출미만	1.8	0.9	0.1	32.1	37.8	25.1	2.3	100.0 (792)
중졸	0.8	3.6	0.4	37.8	31.7	25.3	0.4	100.0 (249)
고졸	0.2	8.8	3.2	30.3	27.5	27.7	2.3	100.0 (433)
초대졸	3.3	7.0	1.5	19.4	29.7	36.6	2.6	100.0 (273)
대졸이상	0.5	6.2	4.8	11.9	34.3	37.1	5.2	100.0 (21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02), 표 III-31.

5. 입축적 근대성, 복합적 가족기능, '가족피로'

그리고 한국의 입축적 산업화와 사회변동은 매우 가족중심적 혹은 가족의존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유교적·도구주의적·서정주의적·개인주의적 등 다양한 가족이념에 내재된 무수한 가족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다수 한국인들이 일종의 '가족피로'를 만성적으로 느껴왔다. 예를 들어, 유교적 가족이념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전적인 책임을 당연시하게 만들었고, 도구주의 가족이념은 가족성원들의 사회적 성공과 가족 자원의 축적을 위해 가족이 교육에서부터 부동산투기(투자)에 이르기까지 흔히 '치마바람'으로 불리는 전략적 지원행위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서정주의 가족이념은 가족성원에 대한 심성적 보호 기능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면적 관리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미화시켜 왔고, 개인주의 가족이념은 청소년 등의 개체성을 (사회적 비협조 속에) 가족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사회재생산의 전방위적 가족 의존 상황에서 부부노동가족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재생산 체계의 위기가 중첩되는 경우 가족과 사회의 견잡을 수 없는 위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제10장, “한국가족의 정상위기”).

6. 사회재생산 포기의 확산: 개인적 해결과 국가적 난관

이러한 사회재생산 체계의 위기에 대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는 적극적 대응책을 시급히 찾아 사회재생산 체계를 다시 안정화시켜야 하지만, 개인들 차원에서는 사회재생산 활동의 자포자기식 포기나 아예 사회재생산의 소요 자체를 사전에 제거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부양의 포기, 출산 기피 등의 행태가 급속히 확산되어 노인 자살이 국제적 선두 추세에 있고, 출산율은 아예 세계 최저로 하락했다.

7. 사회재생산의 상품화 (시장 조달): 계층적 한계

일부 여유계층 부부노동가족들의 경우 여유소득을 이용해 사회재생산의 상당 부분을 “가사도우미” 노동이나 상업적 서비스에 의존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도 있지만, 빈곤층 부부노동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시장의존적 사회재생산은 별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표 12〉 경제활동상태별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자 분포

(단위: %)

	시 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가정부 파출부	본인	남편	다른 자녀	기타	전체
전체	1.8	1.1	0.2	0.4	93.5	0.7	0.3	2.0	100.0
취업자	3.9	2.0	0.4	0.7	89.3	0.9	0.3	2.6	100.0
실업자	0.0	0.8	0.0	0.0	98.3	0.0	0.0	0.8	100.0
비경제활동자	0.2	0.4	0.0	0.3	96.6	0.7	0.4	1.5	100.0
자영업자	2.4	0.7	0.3	0.3	91.9	1.4	0.7	2.4	100.0
무급가족종사자	3.5	0.0	0.2	0.0	93.2	0.2	0.2	2.6	100.0
가내근로자	0.0	0.0	0.0	0.0	96.4	0.0	0.0	3.6	100.0
전일제	5.5	3.9	0.7	1.4	83.7	1.1	0.4	3.2	100.0
시간제	2.5	2.5	0.0	0.0	92.6	1.0	0.0	1.5	100.0
관리자, 전문가	9.8	9.8	0.9	5.4	74.1	0.0	0.0	0.0	100.0
준전문가	6.8	5.5	0.0	0.0	86.3	1.4	0.0	0.0	100.0
사무직	7.7	5.1	1.3	1.3	78.8	0.6	0.0	5.1	100.0
서비스직	4.1	0.9	0.3	0.3	89.3	1.2	0.9	3.0	100.0
판매직	3.5	0.4	0.8	0.0	91.5	1.6	0.4	1.9	100.0
농어업직	1.7	2.0	0.0	0.0	95.2	0.0	0.0	3.0	100.0
기능공	1.4	2.0	0.0	0.7	92.6	0.0	0.7	2.7	100.0
기계조립공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단순노무직	1.0	0.0	0.0	0.0	94.4	1.5	0.0	3.1	100.0

자료: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02), 표 V-3.

8. 부부노동가족의 유형별 사회재생산 소요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부부노동가족의 유형별로 사회재생산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과 해결책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민감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국가적 대책이 찾아져야 한다. 최근 산업구조 및 계층구성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 WCF-A형(저소득층에서 주부 노동으로 남편의 불안정 노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유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앞으로 WCF-C형(저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에 종사하여 부부가 영구적으로 동시 노동에 종사하여야 생계가 유지되는 유형)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고용시장의 부침에 따라 WCF-B형(부부 공동노동자영업 종사)의 중요성도 상황에 따라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사회재생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보완책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WCF-D형(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과 이에 준하는 경제지위를 가진 배우자 유형)의 비중 역시 점증할 것이나, 이들의 경우 한편으로 소속 조직으로부터 사회재생산 관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비스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9. 부부노동가족 이외의 사회재생산

부부노동가족 보편화 시대의 점진적 도래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규범의 강도가 사회 전반에서 획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회재생산 활동의 가족 중심적 수행이 갖는 문화적 호소력은 소득 상승에 따라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고, 양극화 시대에 여유계층 남성생계부양 가족의 물질적·문화적 여유는 지속적으로 다른 계층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경제)활동보다 사회재생산 활동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부부노동가족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이들 이외의 집단을 포함한) 사회재생산 전반의 관리·지원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제2주제>

맞벌이가구의 실태를 통해 본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맞벌이가구의 실태를 통해 본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사회의 소득의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빈곤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영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각종 현금 및 현물급여의 확대 등의 재분배정책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이나 사회보장부담금 징수를 통한 빈곤완화 및 불평등완화 효과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시장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확대 경향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병희·강신욱 외 2007, 여유진 2009). 더구나 최근 들어 시장소득증가율의 분위간 역진성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강신욱 2008), 이는 거시경제적 성장이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를 귀결될 것이라는 이른바 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을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분배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확대나 고용안정성 제고,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구소득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득원의 수를 늘리거나 이미 경제활동을 하

는 가구원의 시간당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복지정책의 영역과 좀 더 관계가 있는 것은 가구소득원, 즉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취업 배우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취업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전환시키고, 기존 맞벌이 가구에서 배우자의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구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적어도 가구소득의 하락을 방지하는 직접적 방법인 만큼,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및 잠재적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상가구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이를 위해 맞벌이 지원 대상 가구를 유형화하고,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음 2절에서는 전체가구를 가구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후, 이 가운데에서 맞벌이 정책의 대상으로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를 정의한다. 다음 3절에서는 이 두 유형의 가구의 특성을 비교한다. 여기서는 두 유형 사이에 가구소득의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구주나 배우자의 인적자원 상의 특성에 있어서는 두 유형 사이에 가구소득의 차이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가구 사이에서 어떤 가구는 맞벌이가 되고 어떤 가구는 홑벌이가 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4절의 내용이다. 4절이 주로 홑벌이 가구의 맞벌이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분석이라면, 5절은 맞벌이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출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룬다. 6절은 이 글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요약이다.

2) 분석자료와 방법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자료는 2002년까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놓여진 거주 가구나 비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의 실태만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은 분석 대상 시기와 집단을 둘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이다. 즉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이하 도시근로자가구)는 1998~2008년까지, 비도시지역과 비근로자까지를 포함하는 2인 이상 가구(이하 전체가구)에 대해서는 2003년~2008년까지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하의 분석에서 대상계층의 구분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특성을 구분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로 가구주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각 가구가 처한 소득분포상의 지위에 대해 분석할 때에는 주로 시장소득(=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을 이용하였으나, 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처분소득(=경상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부담금)을 이용하였다.

가구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주로 기본적 기술통계량의 분석에 의존했으나 4절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한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2. 맞벌이 지원대상 가구

1) 가구유형 구분과 맞벌이가구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대상으로서의 맞벌이 가구 또는 잠재적 맞벌이 가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연령, 동거여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라고 할지라도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고령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지원의 대상을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고용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연령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동거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 때문이다. 즉 경우에 따라 비동거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에 소득지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맞벌이가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계청의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취업여부, 그리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대 및 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체가구를 유형화 할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1인 가구
- ② 2인 이상 가구 중 배우자가 없는 가구
- ③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25~60세 미만이면서 가구주와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 ④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25~60세 미만이면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 ⑤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 중 한사람의 연령이 2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가 동거하는 가구
- ⑥ 연령 조건은 ⑤와 같으나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기타가구).¹⁾

위의 유형들 가운데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구는 유형 ③과 ④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③의 유형은 배우자가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④의 유형은 맞벌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위의 유형들 가운데 ③의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④의 가구를 맞벌이가구로 지칭할 것이다.

1)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를 경우 ④는 가계조사 원시 자료상에 구분되어 있는 맞벌이가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⑤의 가구 가운데 일부는 가계조사 자료상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맞벌이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서 우선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표 1〉 가구유형별 구성비

(단위: %)

		전체 대비	2인 이상 대비	유배우자 대비
①1인가구		20.3		
2인이상 가구	②무배우자 가구	10.8	13.5	
	유배우자 가구	69.0	86.5	100.0
	③홀벌이 가구	31.2	39.1	45.2
	④맞벌이 가구	20.3	25.5	29.5
	⑤고령 유배우가구	14.0	17.5	20.2
	⑥기타	3.5	4.4	5.1

자료: 통계청, 2008년 가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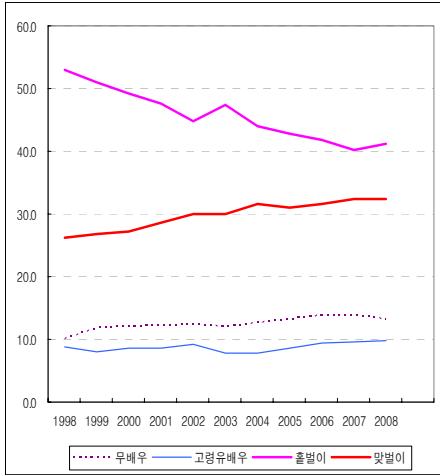
2008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인 포함 비농어가 가구를 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 따르면 홀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 31.2%, 맞벌이가구는 전체가구의 20.3%를 차지하며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가구의 51.5%가 된다.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9.1%, 25.5%를 차지하며, 유배우가구 가운데에서는 각각 45.2%와 29.5%를 차지한다. 물론 전체가구의 절반이 넘는 홀벌이 + 맞벌이 가구가 모두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가운데에서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홀벌이 가구 가운데에서도 고소득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책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가구의 소득 지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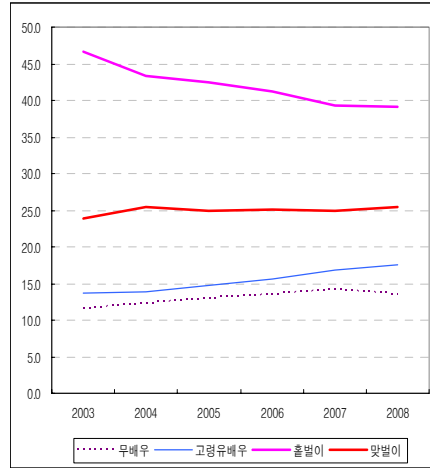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a)와 2인 이상 전체 비농어가구(b)의 유형별 비중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 가구구성의 변화

(a) 도시근로자



(b) 비농어가 전체



도시근로자의 경우 홀벌이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 약 53% 였던 것이 2008년에는 약 41%로 11년간 10%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6%에서 32%로 약 6%p 증가하였다. 2인 이상 가구에서도 홀벌이 가구의 감소와 맞벌이가구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도시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변화 폭은 도시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고, 대신 고령 유배우 가구 비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홀벌이 가구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2003년의 경우 맞벌이가구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고령유배우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홀별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성 비교

1) 소득지위 비교

홀별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는 가구주 이외의 소득원이 한명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도시근로자가구(또는 2인 이상 가구)의 연도별 평균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홀별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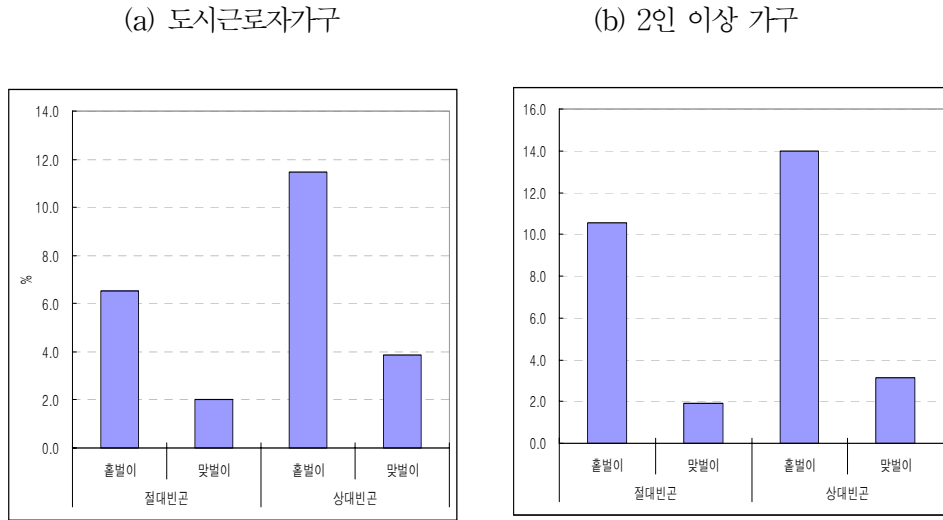
<표 2> 홀별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상대소득수준 변화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평균
도시근로자	홀별이	92.7	93.9	93.5	92.9	92.7	95.1	95.3	94.8	95.5	96.3	97.0	94.5
	맞벌이	123.8	124.0	127.1	126.4	125.1	121.0	120.7	123.2	122.8	122.9	123.4	123.7
	맞벌이/홀별이	1.33	1.32	1.36	1.36	1.35	1.27	1.27	1.30	1.29	1.28	1.27	1.31
전체가구	홀별이						98.9	98.5	99.7	100.3	101.7	101.8	100.1
	맞벌이						132.1	130.9	133.0	133.7	136.3	139.4	134.2
	맞벌이/홀별이						1.34	1.33	1.33	1.33	1.34	1.37	1.34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시장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홀별이 가구의 소득은 약 94.5,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약 123.7로 나타나, 예상했던 대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홀별이 가구의 소득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맞벌이가구는 평균적으로 홀별이 가구의 약 1.3배의 소득을 얻는데, 최근에 이르러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다.

한편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홀별이 가구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거의 평균수준이고, 맞벌이가구는 평균 대비 134.2%의 소득을 얻고 있다. 맞벌이와 홀별이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1.34배로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크게 나타났었다. 단, 두 유형간 소득격차는 도시근로자가구에서와는 달리 2005년 이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빈곤율 비교



이러한 소득격차는 가구의 빈곤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빈곤율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도시근로자 홑벌이가구의 절대빈곤율이 기간 평균 약 6.5%인 반면 맞벌이가구는 약 2.5%이고, 상대빈곤율은 홑벌이가구가 11.5%, 맞벌이가구가 3.9%이다. 빈곤율의 차이는 2인 이상 가구에서 더욱 확대되어, 홑벌이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0.5%, 맞벌이가구는 1.9%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빈곤율은 홑벌이가구가 14.0%인 반면, 맞벌이가구는 3.1%에 불과했다.

맞벌이 가구의 계층 분포를 보면, 맞벌이가구는 주로 중상 이상의 계층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계층분포를 보여주는데 홑벌이가구에서 중상층(시장소득 중위값의 75%~150%)에 속하는 비중은 맞벌이가구와 비슷하나 상위층(중위소득의 150% 이상)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맞벌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홑벌이 가구 중 중하층(중위소득의 50%~75%)의 비중은 맞벌이 가구 중 중하층 가구의 비중의 2배 이상이다. 요컨대, 두 가구유형의 계층구성비를 비교할 때, 중상층의 비율은 비슷하나 나머지 계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볼 때, 빈곤층과 중하

층에 속하는 홀별이가구가 맞벌이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들 계층에 속하는 기존 홀별이 가구의 수는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홀별이 가구의 맞벌이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책대상이 될 계층은 바로 이 계층일 것이다.

〈표 3〉 홀별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계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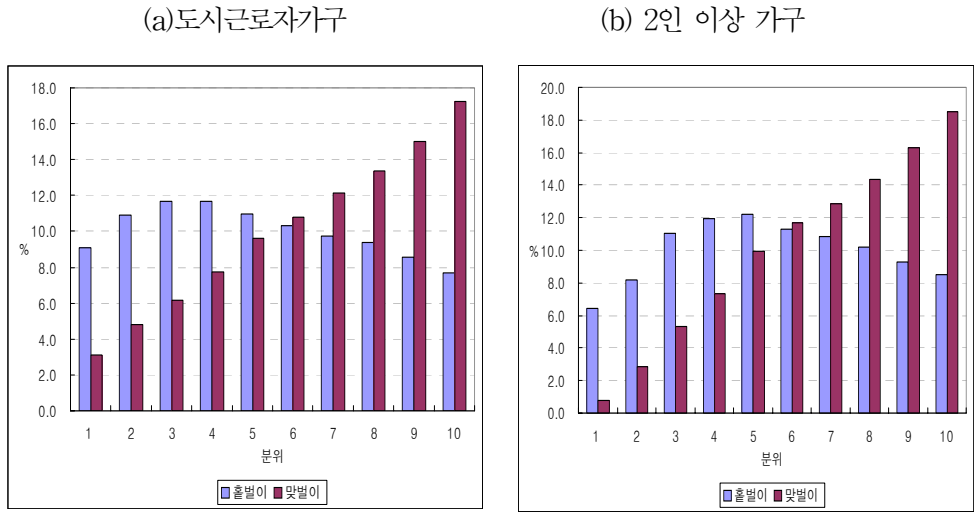
(단위: %)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도시근로자	홀별이	11.5	20.7	48.9	18.9
	맞벌이	3.9	10.3	50.4	35.5
2인 이상	홀별이	13.4	16.1	48.7	21.8
	맞벌이	3.2	7.8	48.1	40.8

한편 아래의 [그림 3], [그림 4]는 각각 맞벌이와 홀별이 가구의 가구소득분위 분포와 가구주의 소득분위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주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을 이용하여 10분위로 구분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는 1998~2008년간 분위별 분포값의 평균이고, 2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2003~2008년간 평균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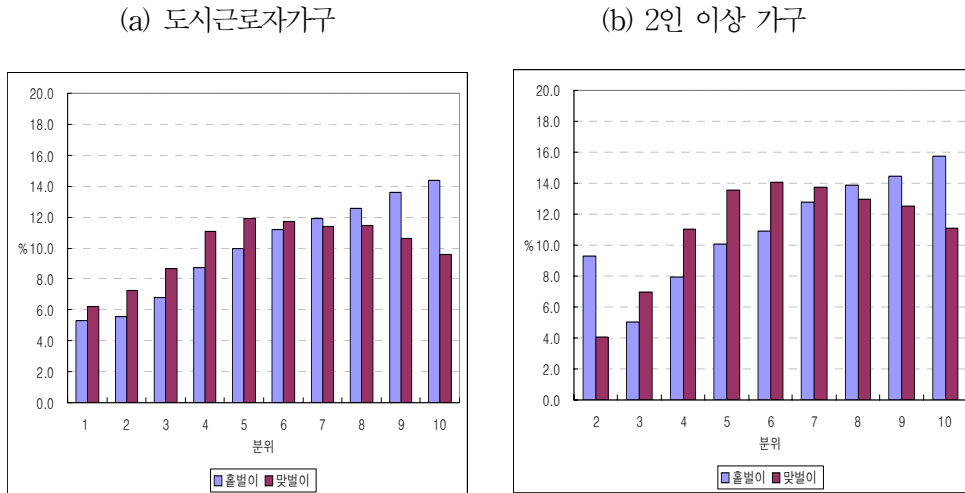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맞벌이 가구의 분위별 분포는 상위분위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홀별이가구는 각 분위별로 7~11%의 비율을 보여 특정 분위에 집중되지 않은 모습이나, 2~5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3]을 보면, 홀별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 내의 소득불평등이 훨씬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유형간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는 2인 이상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3]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분위 분포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와 가구주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상위 분위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반면 홑벌이 가구는 4~5분위를 최빈값으로 하는 단봉형 분포를 보였었다. 그런데 [그림 4]의 가구주 소득분위 분포를 보면 홑벌이가 상위 분위로 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맞벌이가구는 5~6분위를 최빈값으로 하는 단봉형 분포를 보인다.

[그림 4] 맞벌이와 홀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분위 분포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도가 배우자 소득이 추가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원(배우자) 추가에 따른 균등화 효과로 인해 완화된다는 것이다.²⁾

2) 맞벌이에 따른 가구소득 증대효과

맞벌이가 가구소득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소득만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한 후, 소득을 얻기 위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구의 시장소득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4>이다.³⁾

2)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인가 심화시킬 것인가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부인의 소득 연관이 강화됨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강화로 귀결이라는 김영미·신광영(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에서 맞벌이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오민홍·서옥순(2007)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3) 여기서 시장소득과 가구주소득 및 배우자소득은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은 단순 금액으로, 1998~2008년간 금액 평균이다.

<표 4>의 마지막 열에서 나타나듯이, 가구주 소득 1, 2분위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주의 소득보다 크다. 가구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배우자 소득의 상대적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가구소득의 증대효과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단 3분위에 비해서 4분위가, 5분위에 비해서 6분위가 배우자의 소득증가 기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소득 최하위 분위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됨으로 인해 시장소득은 거의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 ~ 6분위 사이의 계층은 배우자 소득의 기여율이 큰 차이가 없다. 기여율의 분위간 격차는 1분위와 2분위 사이에서, 6분위와 7분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배우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대상의 선정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4> 맞벌이의 분위별 가구소득 증가효과(도시근로자가구, 1998~2008년 평균)

(단위: 원, %)

가구주 소득분위	시장소득 (A)	가구주소득 (B)	배우자소득 (C)	배우자소득의 가구소득 증가 기여율 =100*A/(A-C)	배우자 소득의 가구주 소득대비 비율 =100*C/B
1	1,447,396	356,579	742,213	205.3	208.1
2	2,065,174	835,680	875,213	173.5	104.7
3	2,338,055	1,122,324	975,107	171.5	86.9
4	2,556,591	1,400,599	1,067,655	171.7	76.2
5	2,891,496	1,668,515	1,181,845	169.1	70.8
6	3,149,780	1,943,669	1,291,426	169.5	66.4
7	3,556,938	2,270,715	1,386,363	163.9	61.1
8	4,139,375	2,704,729	1,583,527	162.0	58.5
9	4,922,979	3,345,312	1,821,366	158.7	54.4
10	6,871,525	4,913,084	2,322,071	151.0	47.3

3)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이와 같이 배우자의 취업은 가구의 소득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계로 홀벌이 가구의 배우자와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가 동일한 인적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홀벌이가구의 배우자가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에 비해 학력이나 연령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갖는다면, 배우자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도시근로자 홀벌이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은 6.4%, 맞벌이 가구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4.4%로 홀벌이 가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주가 남성이고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그 반대인 경우 취업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 기대되는 가구 내 역할을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가구주 성별 구성비의 차이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고, 또한 배우자가 여성인 가구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자 한다면 두 집단 간 여성가구주 비율의 차이는 큰 의미 없을 것이다.

한편 가구주와 배우자의 평균연령 면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듯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홀벌이 가구주는 평균 41세, 맞벌이 가구주는 평균 42세로 약 한 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배우자의 연령도 맞벌이가구가 홀벌이 가구에 비해 약 한 살 정도 많았다.

그러나 연령대 분포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20대 이하와 50대의 가구주 연령비율은 두 집단이 큰 차이가 없지만, 맞벌이 가구의 30대의 비중이 홀벌이에 비해 낮고 40대의 비중은 홀벌이에 비해 높다. 배우자의 연령대 분포도 가구주의 연령대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다. 이 차이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영·유아기 자녀의 육아부담이 (특히 여성) 배우자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가구주와 배우자의 평균연령 비교(도시근로자 '98~'08 평균)

(단위: 세)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가구주연령	홀벌이	40.8	42.9
	맞벌이	41.9	43.1
배우자연령	홀벌이	38.3	40.3
	맞벌이	39.2	40.3

〈표 6〉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분포(도시근로자 '98~'08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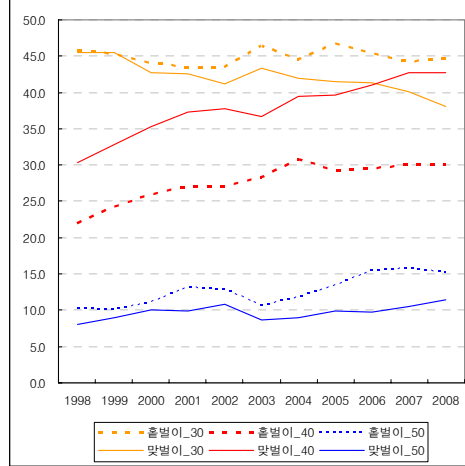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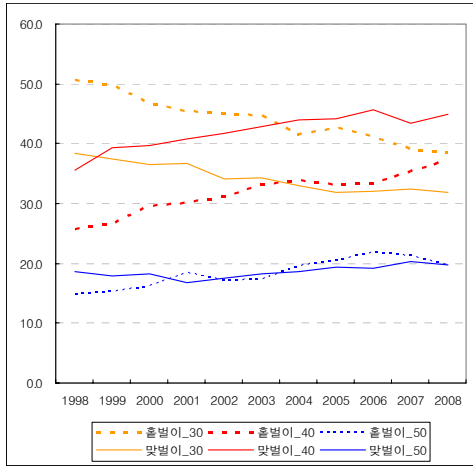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가구주	홀벌이	5.7	44.1	31.8	18.3
	맞벌이	5.0	34.4	42.0	18.6
배우자	홀벌이	14.8	45.6	27.4	12.2
	맞벌이	10.8	41.7	37.7	9.8

한편, 연령대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가구주의 경우 홀벌이/맞벌이 모두 연령구성비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5). 두 집단 모두에서 3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40대의 비중은 증가하며, 50대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령구성은 다소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홀벌이의 경우 30의 비중은 큰 변화 없고 4, 50대의 비중은 증가한다. 반면 맞벌이의 경우 3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40대는 증가하고 50대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에서 최근 들어 40대의 비중이 늘고 30대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림 5] 도시근로자 가구주 및 배우자 연령대 변화 추이

(a) 가구주

(b) 배우자



다음으로 두 집단의 학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가계조사 자료상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연수가 조사되어 있지 않고 최종학력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연수의 비교를 위해서는 교육연수의 환산을 위한 조작적 계산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교육연수 6년, 중졸이하는 9년, 대졸 이상은 16년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두 집단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교육연수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가구주의 경우 홀별이는 13.0년, 맞별이는 12.8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는 홀별이가 12.1년, 맞별이가 12.0년으로 나타났다. 홀별이 가구의 학력이 맞별이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집단의 가구주 및 배우자 교육연수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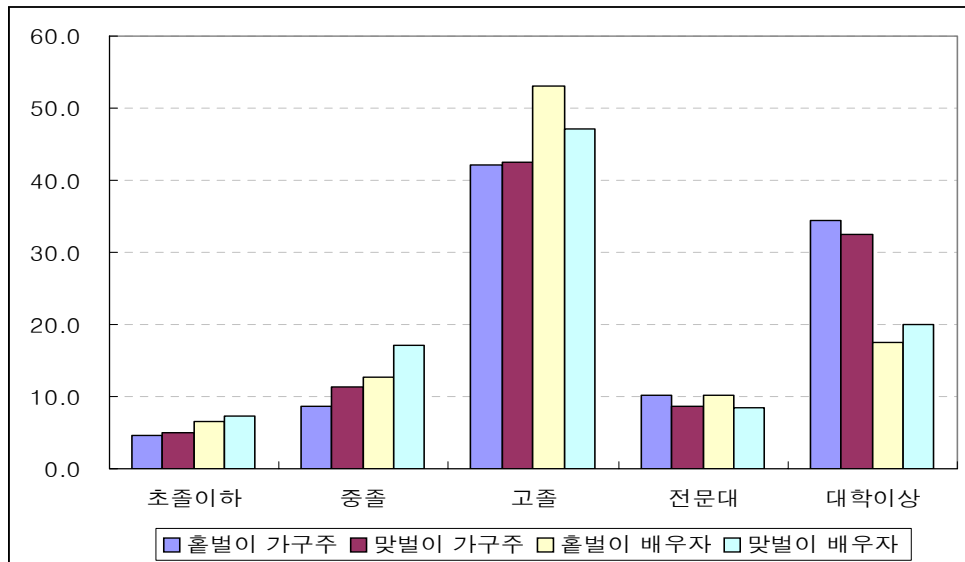
편 학력의 구성에서는 특징적인 면이 확인된다. 홀별이 가구주의 학력구성과 맞별이 가구주의 학력구성을 비교해보면 맞별이가 고졸 이하 가구주의 비율이 홀별이에 비해 다소 높고 반대로 전문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홀별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의 학력구성이 가구주의 학력구성과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이 홑벌이에 비해 높지만, 고졸과 전문대졸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홑벌이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대졸 배우자의 비중은 홑벌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림 6]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학력구성

(단위: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구성을 보면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0세에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홑벌이 가정은 평균 0.24명이었으나 맞벌이 가정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평균 0.10명이었다. 또한 3~6 아동의 수도 홑벌이에서는 0.28명, 맞벌이에서는 0.18명으로 나타났다. 뒤의 4절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맞벌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령의 자녀 수나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맞벌이 가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도시 근로자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가구원 구성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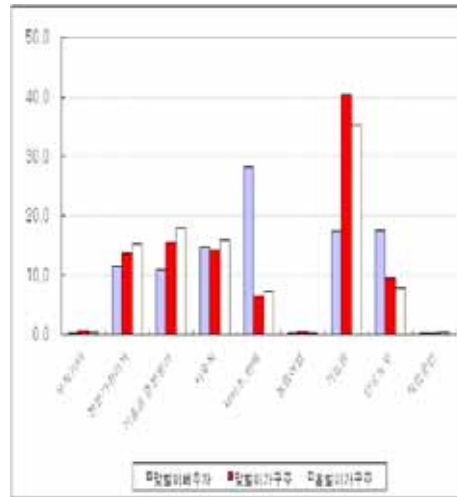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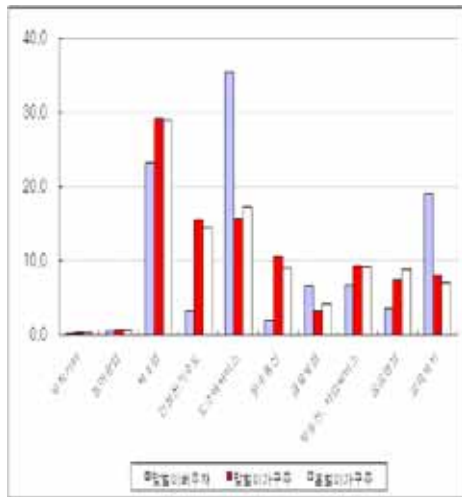
	홀벌이	맞벌이
0~3세	0.24	0.10
4~6세	0.28	0.18
7~13세	0.56	0.62
14~19세	0.25	0.40
65세 이상	0.06	0.09

주: 다른 연령대는 1998-2008년 평균이나 3세미만 아동의 경우 2003년 이후 기간의 평균임.

[그림 7] 맞벌이 가구의 산업 및 직업 분포

(a) 산업분포

(b) 직업분포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종사 산업은 도소매서비스업과 제조업,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각각 1, 2, 3순위를 차지했고, 배우자의 종사직업은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기능원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그림 7]에서 보듯이, 가구주의 직업 분포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비교적 고소득 직업인 전문관리자, 준전문가, 사무직 등의 비율이 홀벌이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기능원,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홀벌이 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종사 직업이 맞벌이의 결정과 관련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하는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4. 맞벌이 결정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평균연령이나 평균 교육연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적자본의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집단 안에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 어떤 가구는 맞벌이가 되고 다른 가구들은 홑벌이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배우자가 있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맞벌이 여부(맞벌이 =1, 홑벌이= 0)이고, 설명변수는 크게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가구소득과 관련된 변수들(소득의 크기, 소득분위 등)은 맞벌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가구주의 소득만을 비교하여 얻어지는 가구주의 소득분위는 맞벌이 여부를 배우자가 선택하기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아래의 <표 8>~<표 9>에서 모형 1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킨 모형이고, 모형 2는 경제적 특성 변수만을, 모형 3은 모두를 포함시킨 모형이다. 각 모형에 포함된 범주형 변수에서 기준 집단은 가구주의 경우 여성, 연령대의 경우 50대, 학력의 경우 대졸,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근로자(지역자 및 무직자),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거주가구이다. 또한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의 경우는 제조업이, 가구주 직업의 경우는 사무직이 기준집단이 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맞벌이 결정요인을 분석한 <표 8>에 따르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즉 배우자가 여성인 가구가 반대의 경우에 비해 맞벌이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 및 배우자의 연령은 맞벌이 확률과 비선형의 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우가 서로 반대였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맞벌이 확률이 낮아지다가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서 다시 맞벌이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배우자 연령의 경우에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가구주 학력이 대졸인 가구에 비해 초졸, 중졸 가구의 맞벌이 확률은 높으나 전문대졸 학력의 가구는 낮게 나타났고, 고졸학력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자인 가구에 비해 중졸 배우자 가구는 맞벌이 확률이

높으나 초등 및 고졸 학력 배우자의 맞벌이 확률은 대졸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 구성 면에서 3세 이하의 영아의 수와 3~6세의 유아의 수가 많아질수록 맞벌이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의 수,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수 증가는 맞벌이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상의 특성도 맞벌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맞벌이 확률은 낮아졌다. 가구주의 종사산업이 제조업인 가구에 비해 농·어·광업, 건설전기수도사업, 도소매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종사 가구의 맞벌이 확률은 낮았고, 반대로 무직 및 기타직 종사가구, 운수통신업 종사가구의 맞벌이 확률은 높았다. 가구주의 종사 직종을 보면, 사무직 종사가구에 비해 무직 및 기타, 농림어업, 기능원 종사가구의 맞벌이 확률은 높고 기술공, 서비스 판매직, 직업군인 가구의 맞벌이 확률은 낮았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모형 3에서는 대졸 가구주에 비해 고졸 가구주 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의 맞벌이 결정확률을 분석한 <표 9>에 따르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비근로자인 가구에 비해 근로자 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높고, 농어촌 거주가구에 비해 도시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낮았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가구주 연령과 맞벌이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들이 배우자 연령과 맞벌이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들과 동일한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모형 3).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자녀수가 맞벌이 확률과 갖는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매우 강한 유의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가구주 종사산업 면에서 금융보험업 종사가구의 맞벌이 확률이 제조업 종사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도시근로자 가구와 다른 점이다(모형 2). 한편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주 직종 변수의 유의미성은 사라진다.

〈표 8〉 도시근로자가구의 맞벌이 결정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상수	-3.358	0.1292	<.0001	-0.00752	0.0007	0.7167	-4.394	0.1328	<.0001
가구주 성	0.2325	0.0102	<.0001				0.3932	0.0108	<.0001
가구주연령	-0.078	0.00767	<.0001				-0.0302	0.00777	0.0001
가구주연령_제공	0.00029	0.00009	<.0001				0.000408	0.000091	<.0001
배우자연령	0.2346	0.00754	<.0001				0.2579	0.00732	<.0001
배우자연령_제공	-0.00236	0.000033	<.0001				-0.00323	0.000094	<.0001
가구주_초졸	0.2108	0.0132	<.0001				0.0366	0.0138	<.0001
가구주_중졸	0.2049	0.012	<.0001				0.0348	0.0126	<.0001
가구주_고졸	-0.00274	0.00801	0.7317				-0.0232	0.00823	0.0049
가구주_전문대	-0.1113	0.0126	<.0001				-0.0238	0.013	0.0398
배우자_초졸	-0.0788	0.0168	<.0001				-0.1694	0.0171	<.0001
배우자_중졸	0.0484	0.0106	<.0001				-0.00887	0.0108	0.4127
배우자_고졸	-0.1735	0.00749	<.0001				-0.1534	0.00739	<.0001
배우자_전문대	-0.0249	0.0126	0.0487				0.0226	0.0128	0.0773
영아	-0.0338	0.00177	<.0001				-0.0339	0.00182	<.0001
유아	-0.2272	0.00877	<.0001				-0.2287	0.00885	<.0001
초등_저	-0.0103	0.00736	0.1739				-0.00232	0.00773	0.7055
초등_고	0.2222	0.00328	<.0001				0.2336	0.00338	<.0001
중고등	0.2457	0.00741	<.0001				0.4035	0.0134	<.0001
노인	0.411	0.0132	<.0001				0.2728	0.00732	<.0001
가구주소득분위				-0.0724	0.00162	<.0001	-0.1194	0.0018	<.0001
무직기타				0.1115	0.036	0.0464	0.1333	0.0571	0.0154
농어광업				-0.2504	0.0488	<.0001	-0.3007	0.0497	<.0001
교육복지				0.2461	0.0153	<.0001	0.2333	0.0163	<.0001
건설전기수도				-0.0536	0.0127	<.0001	-0.1636	0.0132	<.0001
도소매서비스				-0.1236	0.0126	<.0001	-0.0491	0.0129	0.0001
운수통신				0.116	0.014	<.0001	0.1018	0.0144	<.0001
금융보험				-0.0755	0.0031	0.0002	-0.0449	0.0036	0.0296
부동산사업서비스				0.0227	0.0143	0.113	0.0578	0.0147	<.0001
공공행정				0.0221	0.0155	0.1537	-0.0134	0.0159	0.3971
무직기타				0.1435	0.036	0.0076	0.2339	0.0577	<.0001
전문가관리자				-0.0139	0.0031	0.3221	-0.0435	0.0211	0.0394
기술공_준전문가				-0.0443	0.0132	0.021	-0.00338	0.0138	0.6253
서비스_판매				-0.0351	0.022	0.0001	0.00712	0.0227	0.7537
농림어업				0.6333	0.075	<.0001	0.3332	0.0775	<.0001
기능원				0.1076	0.0137	<.0001	0.0709	0.0135	0.0003
단순노무				0.0322	0.0039	0.1241	0.0232	0.0221	0.1874
직업군인				-0.755	0.1023	<.0001	-0.6334	0.1039	<.0001

주: 가구주 성은 여성, 연령대는 50대, 학력은 대졸 이상, 가구주 산업은 제조업, 가구주 직업은 사무직이 기준집단임.

〈표 9〉 2인 이상 비농어가의 맞벌이 결정요인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표준 오차	P > ChiSq	계수	표준 오차	P > ChiSq	계수	표준 오차	P > ChiSq
상수	-3117	0.1346	<.0001	-15366	3364	0.6366	-49765	32436	0.125
가구주성	0.3048	0.0106	<.0001				0.4286	0.0116	<.0001
가구주연령	-0.0149	0.00811	0.0363				0.0148	0.00848	0.0818
가구주연령_제공	0.000036	0.000038	0.5434				-0.00021	0.000097	0.0273
배우자연령	0.1787	0.00805	<.0001				0.2236	0.00839	<.0001
배우자연령_제공	-0.00244	0.000097	<.0001				-0.00295	0.000101	<.0001
가구주_초졸	-0.0125	0.0176	0.4797				-0.0736	0.0191	<.0001
가구주_중졸	0.1248	0.0116	<.0001				0.0272	0.0125	0.0297
가구주_고졸	0.0204	0.00775	0.0083				-0.00898	0.00825	0.2765
가구주_전문대	-0.015	0.0124	0.2294				0.0365	0.0131	<.0001
배우자_초졸	0.0364	0.0167	0.0008				-0.0576	0.0179	0.0013
배우자_중졸	-0.0329	0.0107	<.0001				-0.1385	0.0113	<.0001
배우자_고졸	-0.1408	0.00748	<.0001				-0.1189	0.00786	<.0001
배우자_전문대	-0.0258	0.0125	0.0381				0.0492	0.013	0.0001
영아	-0.8309	0.0109	<.0001				-0.8453	0.0112	<.0001
유아	-0.3001	0.0093	<.0001				-0.3004	0.00999	<.0001
초등_지학년	-0.1305	0.00762	<.0001				-0.1212	0.00791	<.0001
초등_고학년	0.0987	0.00866	<.0001				0.1272	0.00902	<.0001
중고등학생	0.116	0.00715	<.0001				0.1438	0.00748	<.0001
노인	0.4433	0.0126	<.0001				0.4866	0.0134	<.0001
도시	-0.035	0.00527	<.0001				0.0767	0.0111	<.0001
가구주소득분위				-0.1145	0.00185	<.0001	-0.1653	0.00204	<.0001
근로자더미				0.2354	0.0049	<.0001	-0.6211	0.00974	<.0001
무직기타				-0.1782	0.0705	0.0115	-0.2004	0.0723	0.0036
농어광업				-0.4161	0.039	<.0001	-0.4383	0.0324	<.0001
교육복지				0.0945	0.018	<.0001	0.1423	0.0187	<.0001
건설전기수도				-0.0137	0.0139	0.325	-0.0613	0.0144	<.0001
도소매서비스				-0.1898	0.0135	<.0001	-0.1643	0.014	<.0001
운수통신				0.4007	0.0149	<.0001	0.4008	0.0154	<.0001
금융보험				0.0359	0.023	<.0001	0.0914	0.0232	<.0001
부동산_사업서비스				0.0617	0.0157	<.0001	0.0913	0.0162	<.0001
공공행정				0.1888	0.0176	<.0001	0.1585	0.0182	<.0001
무직기타				-14.073	26.729	0.59	-14.0661	25.9241	0.5877
전문가관리자				1.8407	3.364	0.5822	1.725	3.2406	0.5945
기술공_준전문가				1.7784	3.364	0.535	1.7382	3.2406	0.5874
서비스_판매				1.5468	3.364	0.648	1.6207	3.2406	0.617
농림어업				2.6327	3.361	0.4279	2.536	3.2413	0.4338
기능원				1.8735	3.364	0.5742	1.8866	3.2406	0.5646
단순노무				1.716	3.364	0.608	1.7511	3.2406	0.5889
직업군인				0.8974	3.364	0.786	1.0544	3.2416	0.745

주: 가구주 성은 여성, 연령대는 50대, 학력은 대졸 이상, 가구주 종사상 지위는 비근로자, 지역은 농어촌, 가구주 산업은 제조업, 가구주 직업은 사무직이 기준집단임.

다음으로, 맞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성배우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배우자가 여성인 가구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10>은 여성배우자의 연령대에 따라 맞벌이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표 11>은 여성배우자의 학력에 따라 맞벌이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두 표 모두 2인 이상 가구 중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여성인(가구주가 남성인)가구만을 비교하고 있으며, 위의 세 분석 모형 중 모형 3을 적용하였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대에 따라 추정계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변수는 가구주 학력 중 초등 및 전문대 가구, 그리고 배우자 학력 중 전문대졸업 가구이다. 20~40대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초등학력인 경우 맞벌이 확률이 낮아지나, 50대 가구에서는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배우자가 4, 50대인 경우 전문대 학력의 배우자가 대졸 배우자보다 맞벌이 확률이 높다는 점도 다른 연령대와 다른 모습이다. 또한 50대 여성 배우자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수도 맞벌이 확률에 (-)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가구주 종사 산업의 영향력은 20대와 50대에서는 유의미성이 없으나 3, 40대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가구주의 종사 직업은 20대에서만 일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관측될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50대 여성 배우자 집단은 다른 연령대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성배우자의 학력에 따라 맞벌이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볼 경우(<표 10>), 영유아 및 노인가구원의 수, 가구주의 소득분위가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모든 학력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징적인 점은 배우자의 연령이 맞벌이에 미치는 요인이 대졸학력 배우자에서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임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저연령대와 고연령대에서 맞벌이 확률이 낮아지지만, 대졸 여성 배우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맞벌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 배우자의 경우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연령대에서 취업의 기회를 잡기 쉽지만 저학력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수가 맞벌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 학력 및 대졸 학력에서는 (-)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종사 산업은 초등학력과 전문대 졸업 배우자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구주의 종사 직종은 중졸 이상의 모든 학력 여성에게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측되지 않았다.

〈표 10〉 2인 이상 비농어가의 여성배우자 연령대별 맞벌이 결정요인

	20대		30대		40대		50대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추정 계수	표준 오차
상수	-0.5147	41.4981	-2.4811	4.1627	-3.1444	5.7206	-9.1605	17.6555
가구주연령	-0.1624***	0.0513	0.0628***	0.023	0.1361***	0.0279	0.3207***	0.1167
가구주연령 제곱	0.00238***	0.000786	-0.00075**	0.000299	-0.00177***	0.000294	-0.00326***	0.00108
가구주_초졸	-0.6402***	0.2209	-0.6218***	0.0537	-0.0812***	0.0285	0.3164***	0.0413
가구주_중졸	0.6303***	0.1231	0.0387	0.0322	0.0661***	0.0182	0.1535***	0.0324
가구주_고졸	0.1608**	0.0719	0.0817***	0.0185	0.0433***	0.0128	0.1292***	0.0275
가구주_전문대	0.1145	0.0758	0.3119***	0.0231	-0.0676***	0.0239	-0.3531***	0.0746
배우자_초졸	-0.2318	0.3737	0.0635	0.0673	-0.2282***	0.0286	-0.3224***	0.0385
배우자_중졸	-0.5974***	0.1467	-0.1236***	0.0315	-0.1642***	0.0168	-0.4356***	0.0317
배우자_고졸	-0.0564	0.106	-0.1181***	0.0207	-0.057***	0.0129	-0.3937***	0.0285
배우자_전문대	0.2203**	0.1082	-0.0925***	0.0248	0.2694***	0.0272	0.5591***	0.0711
영아	-1.0931***	0.0258	-0.7288***	0.0143	-0.985***	0.0513	-0.3646***	0.0655
유아	-0.1866***	0.034	-0.2343***	0.0123	-0.4084***	0.0302	0.00459	0.0867
초등_저학년	0.052	0.0644	-0.0229**	0.0112	-0.1776***	0.0163	-1.2898***	0.1338
초등_고학년	0.0579	0.2157	0.1991***	0.0143	0.1446***	0.0139	-0.1801*	0.1003
중고등학생	-1.8941***	0.35	0.4541***	0.0201	0.1058***	0.00943	-0.0119	0.0415
노인	1.0837***	0.0795	0.7032***	0.0223	0.4079***	0.0209	0.3315***	0.0434
도시	0.1499***	0.0216	-0.081***	0.00881	-0.0584***	0.00913	0.0312**	0.0188
가구주소득분위	-0.0903***	0.00335	-0.1594***	0.00329	-0.2068***	0.00332	-0.139***	0.00645
근로자더미	0.3215***	0.024	0.3138***	0.00802	0.3849***	0.00768	0.2741***	0.0155
무직기타	-9.2747	131	0.8527***	0.1399	-0.3116***	0.1019	-14.2256	467.7
농어평업	-13.154	352.2	-0.9239***	0.1078	-0.4829***	0.0766	1.8087	51.9715
교육복지	3.3054	41.4909	0.0837**	0.0334	0.2341***	0.0308	1.3424	51.9713
건설전기수도	2.4614	41.4909	-0.0663***	0.0255	-0.1096***	0.0221	1.3351	51.9713
도소매서비스	2.4779	41.4909	-0.2256***	0.0246	-0.1804***	0.0224	1.4195	51.9713
운수통신	2.8474	41.4909	0.3062***	0.0277	0.4665***	0.0237	1.7482	51.9713
금융보험	2.6609	41.491	0.0355	0.0358	-0.0916**	0.0393	2.327	51.9714
부동산_사합서비스	2.7092	41.4909	-0.1289***	0.0281	0.2686***	0.0273	1.4177	51.9713
공공행정	3.2841	41.4909	0.1197***	0.0312	0.2118***	0.0279	1.5375	51.9713
무직기타	-2.9996	1.9471	-14.1547	33.1185	-14.3101	45.4598	-1.0472	461.9
전문가관리자	0.8626***	0.2363	1.8964	4.14	1.5987	5.6825	0.1764	65.9803
기술공_준전문가	0.6247***	0.2225	1.7128	4.1399	1.9531	5.6825	-0.2521	65.9803
서비스_판매	0.3273	0.2213	1.6838	4.1399	1.5204	5.6825	0.0546	65.9803
농림어업	-0.3523	1.2104	2.9455	4.1425	2.5285	5.6833	0.4151	65.9806
기능원	0.1977	0.2225	1.9126	4.1399	1.9559	5.6825	0.3197	65.9803
단순노무	0.5457**	0.2312	1.8373	4.14	1.6489	5.6826	0.515	65.9803
직업군인	0	.	0.3115	4.1427	1.472	5.684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함.

〈표 11〉 2인 이상 비농어가의 여성배우자 학력별 맞벌이 결정요인

	초졸이하			중졸			고졸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추정 계수	표준 오차	Pr > ChiSq
상수	-0.6163	115.3	0.9957	-10.2643	11.8297	0.3856	-5.9618	4.9865	0.2319
가구주연령	-0.237	0.0617	<0.001	0.1175	0.0355	0.0009	0.0221	0.0136	0.1043
가구주연령 제곱	0.00239	0.000612	<0.001	-0.00129	0.000369	0.0005	-0.00024	0.000159	0.1294
배우자연령	0.1917	0.0494	0.0001	0.3476	0.0297	<0.001	0.2364	0.0142	<0.001
배우자연령 제곱	-0.00245	0.000519	<0.001	-0.00422	0.000331	<0.001	-0.00391	0.000177	<0.001
가구주_초졸	3.211	114.7	0.9777	0.1166	0.0494	0.0184	0.0426	0.0524	0.4162
가구주_중졸	3.2843	114.7	0.9772	0.272	0.0381	<0.001	-0.1098	0.0267	<0.001
가구주_고졸	3.1731	114.7	0.9779	0.2716	0.0373	<0.001	-0.00418	0.0159	0.7322
가구주_전문대	3.6494	114.7	0.9746	-0.1238	0.1159	0.2741	0.0743	0.0206	0.0003
영아	-0.4925	0.0872	<0.001	-0.8219	0.0575	<0.001	-1.0367	0.0175	<0.001
유아	-0.8854	0.0944	<0.001	-0.3048	0.0534	<0.001	-0.3303	0.0136	<0.001
초등_저학년	-0.4346	0.0675	<0.001	-0.2354	0.0341	<0.001	-0.0838	0.0108	<0.001
초등_고학년	-0.0175	0.0716	0.8068	0.1978	0.0302	<0.001	0.1568	0.0121	<0.001
중고등학생	-0.0643	0.0319	0.0438	0.247	0.0187	<0.001	0.1833	0.0104	<0.001
노인	0.5547	0.0583	<0.001	0.1277	0.0381	0.0008	0.5397	0.0187	<0.001
도시	-0.028	0.0392	0.4754	0.1517	0.0304	<0.001	0.075	0.0155	<0.001
가구주소득분위	-0.1307	0.00897	<0.001	-0.1524	0.00561	<0.001	-0.1922	0.00288	<0.001
근로자더미	-0.6553	0.0442	<0.001	-0.9077	0.0268	<0.001	-0.6893	0.0137	<0.001
무직기타	-16.8078	106.5	0.8746	1.0961	0.2175	<0.001	-0.1342	0.0946	0.1558
농어광업	1.9907	11.8342	0.8664	-1.2579	0.1487	<0.001	-0.4814	0.0806	<0.001
교육복지	1.3282	11.8344	0.9106	-0.5467	0.0737	<0.001	0.107	0.0337	0.0015
건설전기수도	1.6394	11.8336	0.8898	-0.2418	0.0422	<0.001	0.017	0.0204	0.4052
도소매서비스	1.7314	11.8337	0.8837	-0.236	0.0439	<0.001	-0.088	0.0202	<0.001
운수통신	1.8257	11.8337	0.8774	0.3074	0.0443	<0.001	0.4315	0.0213	<0.001
금융보험	3.6394	11.8355	0.7572	0.9842	0.1221	<0.001	-0.1533	0.0376	<0.001
부동산 사업서비스	1.816	11.8337	0.878	-0.1721	0.0571	0.0026	0.1404	0.025	<0.001
공공행정	1.0709	11.8339	0.9279	-0.0533	0.0644	0.391	0.1923	0.0261	<0.001
무직기타	1.6881	0.4428	0.0001	-15.764	94.448	0.8574	-14.2372	39.8512	0.7209
전문가관리자	-1.013	0.208	<0.001	1.2439	11.8063	0.916	1.6976	4.9815	0.7333
기술공 준전문가	-0.4501	0.176	0.0106	2.6691	11.8062	0.8211	1.7876	4.9815	0.7197
서비스,판매	-0.2876	0.0792	0.0003	1.6067	11.8061	0.8917	1.6157	4.9815	0.7457
농림어업	0.5044	0.1835	0.006	2.2915	11.8075	0.8461	2.5624	4.9826	0.6071
기능원	0.3632	0.0471	<0.001	2.2617	11.8061	0.8481	1.8609	4.9814	0.7087
단순노무	0	.	.	2.3803	11.8061	0.8402	1.694	4.9815	0.7338
직업군인				1.5385	11.8087	0.8963	1.1571	4.9826	0.8164

〈표 11〉 계속

	전문대			대학이상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추정계수	표준오차	Pr > ChiSq
상수	-3.9838	72.4374	0.9561	-1.923	6.7359	0.7753
가구주연령	-0.1341	0.0342	<.0001	0.1922	0.0252	<.0001
가구주연령_제곱	0.00143	0.00045	0.0015	-0.00262	0.00031	<.0001
배우자연령	0.1491	0.0347	<.0001	-0.089	0.026	0.0006
배우자연령_제곱	-0.00156	0.000479	0.0011	0.00128	0.00034	0.0002
가구주_초졸	-12.384	287.2	0.9656	-2.3014	0.2722	<.0001
가구주_중졸	3.556	71.7914	0.9605	0.9331	0.1655	<.0001
가구주_고졸	3.0301	71.791	0.9663	0.2485	0.082	0.0024
가구주_전문대	2.9888	71.791	0.9668	0.6835	0.0839	<.0001
영아	-0.7915	0.0269	<.0001	-0.6145	0.0211	<.0001
유아	-0.3185	0.0286	<.0001	-0.1473	0.0204	<.0001
초등_저학년	0.0698	0.028	0.0125	-0.166	0.0191	<.0001
초등_고학년	0.3425	0.0358	<.0001	0.0204	0.0234	0.3841
중고등학생	0.0798	0.0344	0.0202	-0.0121	0.023	0.5991
노인	0.6174	0.0655	<.0001	0.8383	0.0354	<.0001
도시	0.4464	0.0382	<.0001	0.0145	0.0346	0.6753
가구주소득분위	-0.1654	0.00711	<.0001	-0.1593	0.00524	<.0001
근로자더미	-0.4342	0.035	<.0001	-0.5278	0.0255	<.0001
무직기타	-0.3214	0.3013	0.2861	-1.4343	0.2533	<.0001
농어광업	-0.4311	0.1677	0.0101	-1.7021	0.2907	<.0001
교육복지	-0.0025	0.0602	0.9668	0.6601	0.0493	<.0001
건설전기수도	0.0618	0.0528	0.2418	-0.0526	0.0534	0.3247
도소매서비스	-0.0417	0.0479	0.383	-0.0284	0.0482	0.5563
운수통신	0.1468	0.0612	0.0165	0.8383	0.0561	<.0001
금융보험	0.0461	0.075	0.539	0.5141	0.0541	<.0001
부동산, 사업서비스	0.0414	0.0548	0.4495	0.3255	0.0486	<.0001
공공행정	0.1546	0.0589	0.0086	0.7013	0.0534	<.0001
무직기타	-13.1847	77.1503	0.8643	-12.5872	53.7976	0.815
전문가관리자	1.7602	9.644	0.8552	1.1324	6.7252	0.8663
기술공 준전문가	1.7486	9.644	0.8561	1.0315	6.7252	0.8781
서비스,판매	1.3857	9.644	0.8857	0.9768	6.7253	0.8845
농림어업	3.4493	9.6465	0.7207	5.2454	6.7537	0.4374
기능원	1.3397	9.644	0.8895	1.1077	6.7253	0.8692
단순노무	1.4165	9.6443	0.8832	1.7471	6.7256	0.795
직업군인	0.4033	9.6494	0.9667	0.3824	6.7278	0.9547

5. 가계 지출구조를 통해 본 맞벌이 가구의 실태

이제까지의 분석은 주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홑벌이가구가 맞벌이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와 유사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의 미취업으로 인해 입는 소득상실이란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연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 배우자의 취업에 따른 보육 및 교육비 지출비용의 증가나 돌봄의 차이 등이 한 예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현옥(2008)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의 영양상태가 허약으로 평가되는 비율이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보다 다소 높다는 점과, 아침식사를 매일하는 경우가 전업주부 자녀보다 맞벌이 주부 자녀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명금희 등(2004)은 맞벌이가정 미취학자녀의 모유경험과 칼륨, 비타민 A 섭취량은 전업주부 가정보다 낮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전업주부 자녀에 비해 영양이나 복지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는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이며,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 취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지출구조를 비교한다. 아래의 <표 12>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중 맞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요 지출항목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높고 따라서 각종 소비지출 항목 및 비소비지출 항목의 평균지출액이 높다. 예외적인 항목은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증가를 위한 지출의 비중이 맞벌이 가구에서 더 낮다는 점이다. 한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은 맞벌이가구가 홑벌이가구에 비해 약 14.2%p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소비항목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맞벌이가구에서 낮게 나타난다.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10

개 주요 항목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맞벌이가구가 홑벌이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등의 비중이 낮고, 반대로 피복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2〉 도시근로자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지출구조 비교

홑벌이	평균(원)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대비(%)	
	홑벌이	맞벌이	홑벌이	맞벌이	홑벌이	맞벌이
가처분소득	2,421,986	3,241,071	100.0	100.0		
소비	1,980,754	2,190,875	81.8	67.6	100.0	100.0
식료품비	520,826	568,490	21.5	17.5	26.3	25.9
주거비	61,662	65,223	2.5	2.0	3.1	3.0
광열비	94,409	95,539	3.9	2.9	4.8	4.4
가구집기비	80,965	99,148	3.3	3.1	4.1	4.5
피복비	105,645	121,600	4.4	3.8	5.3	5.6
보건의료비	94,571	85,992	3.9	2.7	4.8	3.9
교육비	242,543	280,470	10.0	8.7	12.2	12.8
교양오락비	103,412	102,948	4.3	3.2	5.2	4.7
교통통신비	331,597	386,802	13.7	11.9	16.7	17.7
기타소비	345,125	384,666	14.2	11.9	17.4	17.6
주거비용	672,699	629,917	27.8	19.4		
지급이자	35,033	51,060	1.4	1.6		
자산증가지출	2,923,525	3,689,723	120.7	113.8		
부채감소지출	602,413	714,272	24.9	22.0		
주택부금상환	53,030	62,315	2.2	1.9		

주: 주거비는 가계조사 자료상의 주거비이고, 주거비용은 주거형태의 차이를 감안하여 월세평가액과 월세액을 합한 값임.

그런데 이와 같은 지출구조의 차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상의 특성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통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서 동일한 가구 소득분위에 속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지출구성비를 비교하는 것이 아래의 <표 13>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의 거의 모든 분위에서 거의 모든 소비품목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홑벌이가구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식료품비나 주거비용, 그리고 보건의료비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한 지출항목의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맞벌이 가구가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가구들 사이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지위가 높지만, 동일한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를 비교해 볼 때에는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에 비해 지출의 압박이 크고 더 낮은 소비수준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 6분위 이하에서는 교육비의 비중이 맞벌이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대로 보육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집기가용품비의 비중은 8분위 이상에서 맞벌이가구가 더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⁴⁾ 교육비에 속하는 항목들 가운데에는 아동의 돌봄서비스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맞벌이 가구에서는 특히 교육 및 보육 관련 지출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 분석에서 사용된 가계조사 자료의 일부 연도에서는 보육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 소득분위에 속하는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출비중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표 13〉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위별 홀벌이-맞벌이 가구의 지출구조 비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	1395	1520	1071	1013	999	894	941	843	889	794
식료품비	458	437	309	300	278	264	259	241	242	224
주거비	75	73	40	41	30	32	29	27	25	22
광열비	107	96	65	63	55	51	48	45	43	41
가구집기비	65	62	47	37	44	32	39	31	36	30
피복비	68	62	51	44	49	40	48	40	47	39
보건의료비	98	71	55	35	52	34	46	31	42	29
교육비	192	211	121	155	123	138	114	132	113	123
교양오락비	57	51	45	33	46	31	45	30	44	31
교통통신비	246	250	176	166	166	144	157	143	149	136
기타소비	229	206	163	139	156	129	155	124	148	120
주거비용	566	472	368	299	400	256	317	234	305	220
지급이자	25	33	17	21	18	20	15	18	17	19
자산증가지출	1207	981	1022	898	1076	805	1155	889	1176	938
부채감소지출	418	316	268	264	274	192	258	232	273	204
주택부금상환	25	14	25	14	17	15	19	10	32	12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홀벌이	맞벌이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	854	760	807	730	749	698	704	651	571	546
식료품비	222	208	206	192	189	177	169	157	131	120
주거비	26	21	23	20	22	18	21	18	16	15
광열비	38	37	36	32	32	29	28	25	22	18
가구집기비	35	28	35	32	29	35	29	35	24	29
피복비	46	39	44	39	43	40	40	37	32	35
보건의료비	40	27	36	27	30	27	30	26	22	21
교육비	117	120	116	109	117	96	109	92	90	77
교양오락비	46	31	46	31	41	33	42	33	36	33
교통통신비	140	132	128	127	117	121	112	112	92	93
기타소비	144	117	138	121	130	122	124	115	106	104
주거비용	284	211	272	202	261	196	235	194	190	164
지급이자	15	18	16	17	15	17	14	17	08	13
자산증가지출	1287	982	1226	1068	1192	1069	1266	1158	1234	1294
부채감소지출	262	211	262	217	255	222	223	228	205	225
주택부금상환	20	14	29	16	25	18	24	23	31	26

〈표 14〉 소득분위별, 자가보유비율 비교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홀별이	38.9	45.3	51.3	55.8	60.8	65.5	71.4	76.9	80.1	85.7	63.2
맞별이	42.8	45.7	49.8	54.2	59.6	61.9	63.2	66.3	69.5	74.8	58.8

또한 위의 <표 14>에서 보듯이 맞별이가구는 홀별이 가구에 비해 자가소유비율도 낮고,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증가를 위한 지출이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주택부금 상환 등에서 홀별이보다 낮은 지출비중을 보인다. 이는 맞별이가구가 내집 마련이나 노후대비 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배우자의 취업은 직접적으로 가구소득의 증가에 기여한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배우자의 취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접근방법일 것이다. 맞별이 가구와 홀별이 가구는 비슷한 평균연령과 교육연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인적자원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맞별이를 희망하는 가구의 배우자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배우자의 취업은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가구의 소득분포 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구주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배우자 소득이 가구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계층구분을 통해 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과 중위소득 50%~75%의 중하층에서 분포하는 홀별이 가구의 비중은 해당 계층에 속하는 맞별이 가구 비중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즉 저소득계층일수록 맞별이 지원정책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집단 구분과 무관하게 분명하게 관측되는 가구주의 소득지위가 낮고 영유아의 수가 많을수록 맞별이가 될 확률이 낮아진

다는 점이다. 특히 약 10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수도 맞벌이 결정에 (-)의 영향을 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취업 배우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에는 돌봄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라는 사실이며, 돌봄 지원의 대상이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적어도 10세까지의 아동, 즉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학력 여성의 경우,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졌으나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 기혼여성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학자녀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⁵⁾ 배우자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구 특성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맞벌이 가구는 같은 소득수준의 홑벌이 가구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비나 보건의료비 등 필수적 항목의 지출비중에서도 맞벌이가구의 지출 수준이 낮았다. 반대로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지출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소득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는 또한 같은 소득분위에 속하는 홑벌이가구에 비해 자가보유비율이 낮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자산증식을 위한 지출이나 주택부금 상환액의 비중이 낮았다. 주거비용(자가 및 보증금의 평가액 + 월세액)의 비중도 작다는 것은 맞벌이 가구가 향유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나 보육 등 아동에 대한 돌봄 관련 지출부담을 해소하여 의(醫), 식, 주 등 생활의 기본 영역에서 맞벌이 가구가 누리는 효용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벌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2010년 예산안은 맞벌이 가구 지원에 관하여 일부 진전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가정 0세아에 대한 정기돌봄 서비스사업이 추가된 것, 그리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부부소득 중 작은 쪽 소득의 25%를 공제하여 맞벌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고자 한 것이 그 예이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 지원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우리 사회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

5) 이는 영유아와 보육이 해결되어도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 교육으로 인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김대일(2008)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한다면 맞춤형 가구의 정책적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의 보편적 서비스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2008) 「빈곤의 실태와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방안」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비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대일(2008)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권 2호. pp. 73-102.
- 김민정(2004) 「맞벌이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맞벌이 가정 아동의 복지감 측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권 3호. pp.127-159.
- 김순미·이경희·성지미(2000)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권. pp.219-239.
- 김영미·신광영(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77호. pp.79-106.
- 명금희·신승미·최미정(2004) 「맞벌이가정과 전업주부 가정 미취학자녀의 신체발달과 영양섭취상태 비교연구」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0권 4호. pp.407-416.
- 양세정(2005) 「맞벌이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20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여유진(2009)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연구』 25권 1호, pp.45-68.
- 오민홍·서옥순(2007) 「한국의 맞벌이 부부 프리미엄에 대한 실증분석」 『여성경제연구』 4집 1호. pp.1-17.
-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 이현옥(2008)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 자녀의 영양섭취 상태와 식생활 비교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1권 1호. pp.106-113.

<제3주제>

일-가족 양립과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가족 양립과 맞벌이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일-가족 양립 및 이인소득자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보건복지 정책분야에서 수급자격이나 대상선정의 준거로 맞벌이 가구 여부가 활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 곤란, 여성고용 장애, 고용불안정 및 빈곤심화 등을 기축으로 하는 신 사회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맞벌이가구를 육성·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정책의 과제⁶⁾를 점검하고, 기존 서비스의 조정 및 새롭게 개발될 서비스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일-가족 양립정책의 동향을 보면, 보육정책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급확대 및 이용 보편화, 아동발달과 교육 측면을 통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투자의 확대, 교직원 교육 강화와 근로조건 향상, 모니터링 체계화 등이 강조되고 있고(OECD 2006), 휴가·휴직 정책에서는 휴가기간, 급여수준, 급여수급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아버지 휴가 확대, 급여수준 향상, 경력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급여기간 조정, 시간제나 분할제 등 유연한 운영 등의 경향으로 수렴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8). 이 밖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 및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⁷⁾를 도입하기도 하며(최은영 2007),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자녀양육관련 비용을 세액 공제해 주는 등의 조세지원 방식을 다양화 하고 있다.

6) OECD(2005)도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으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을 증가,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전략을 결합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7) 노동시간 계정, 탄력적 노동시간, 선택적 노동시간, 재량적 노동시간 등

이러한 국제적인 정책동향을 고려하여 그 함의를 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노인케어와 장애인케어의 사회화 정도가 매우 낮은 한국에서는 서구가 주목하는 이동케어 외에도 가족의 케어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느끼는 시간부족(time squeeze)과 돌봄 스트레스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고, 일-가족 양립의 장애요인으로서 한국적 특수성에 해당한다.

전체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매우 적고 급여수준이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는 육아휴직의 take-up rate이 올라갈 것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이 많은 노동자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요원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질 높은 보육정책이며, 과세방식 중 secondary earner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penalty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제가 추가로 요청된다. 특히 보육정책은 일-가족 양립정책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의 공평한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정책인 만큼,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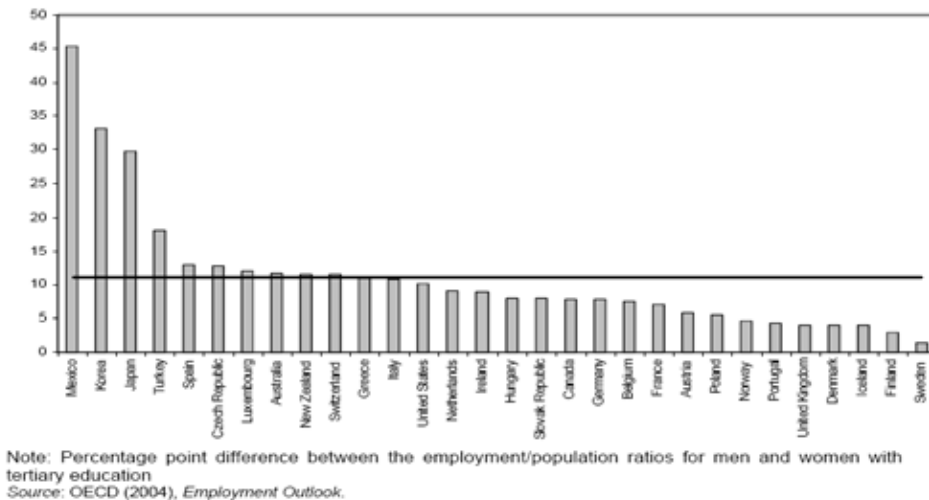
‘어떤 일이라도 해서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기’ vs. ‘노동시장과 가정 내 양성평등을 기치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공유(sharing)를 고민하는 복지체제를 구축하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다른 접근이다. 즉, 빈곤예방책으로 여성 임금노동을 촉진하는 것과 여성노동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취업이 가구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요소로만 조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여성고용촉진은 고령사회에서 부족해지는 생산가능 인력을 충원하는 노동수급 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인소득자 모형(dual earner model)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혼자 생계를 부양하는 가족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인생계부양자 가족의 비중은 서로 다르다. 북유럽이 오래전 70~80%가 된 반면, 미국은 1980년대에 54%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68%로 급증하였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50% 수준을 보이고 있다(에스핑엔더슨 2009: 67). 한편, 한국은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29.5%로서(강신욱 2009), OECD평균인 60%보다 훨씬 낮다. 이는 사회마다 여성취업의 여건이 매우 상이하고, 개인의 선택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실타래 풀기

흔히, 여성취업율의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정책의 과제가 생기는 것으로 주장하는 논의를 많이 접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에서 2007년 50.1%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율도 같은 기간 46.2%에서 48.9%로 답보상태이다. 2005년 25~64세 여성의 고용율은 57.5%로, OECD 가입국 평균인 78.5%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그림 1]에서 보듯,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격차는 매우 커서, OECD국가에서 터키 다음으로 상대격차가 가장 큰 상황이다.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적정임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해야 실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8년 전문대졸 여성 중 42%, 대졸이상 여성 중 21.2%가 임금과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대졸이상 여성의 동일 교육수준 남성대비 취업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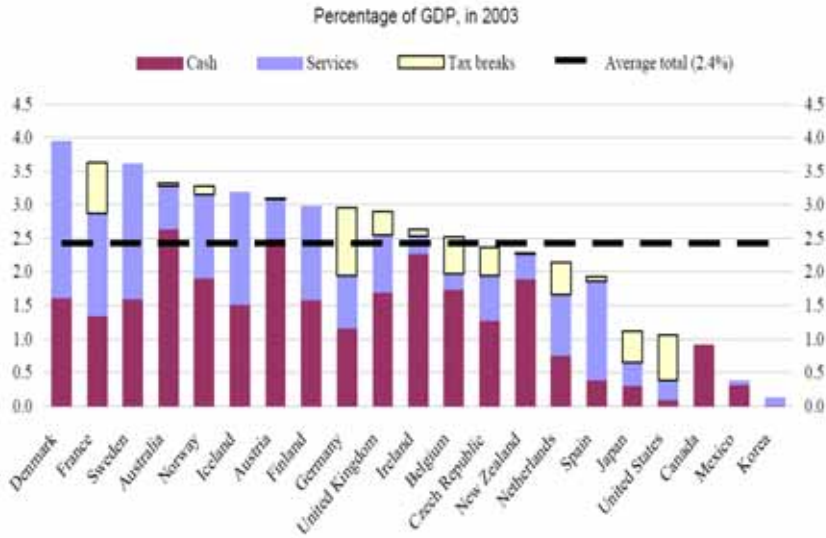
한국의 취업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미혼여성의 취업률과 중고령자의 취업률은 낮지 않다. 결국, 향후 여성 경제활동 촉진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진에서 찾아야 한다. 실제로 기혼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2%에서 2008년 52.2%로 20년 동안 거의 담보 상태이다(2008년 대졸이상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6%). 만30세부터 44세는 주요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데, 이 연령대 전체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은 86%를 차지한다(2008 한국의 성인지 통계).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일(유급 시장노동)과 가족(무급 보살핌노동)을 양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여러 가지 서비스와 휴직제도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경우에도 조기 재진입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는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애는 유급노동과 휴식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 무급노동, 교육 및 훈련, 휴식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⁸⁾.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유급노동, 특히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논하려면 불가피하게 무급노동에 대한 대응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에스핀덴더슨(1999)은 탈가족화 지표로 ①전반적인 서비스 공급 ②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③공보육 ④노인돌봄 등을 지적한 바 있고, 탈가족화의 부족은 가족의 부담을 높여 저출산으로도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국가의 탈가족화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로 구성할 수 있겠고, 결국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한국여성의 취업률 증진은 돌봄의 사회화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차트 1에서 보듯이 가족을 위한 지원이 매우 낮은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8) 이런 맥락에서 가족원 보호, 유급노동, 자기계발 및 훈련, 지역사회 참여, 휴식 등 모든 삶의 요소를 생애주기적으로 조화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일-생활 균형정책(WLB)과 아동·장애인·노인 보호와 유급노동의 순차 혹은 동시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인 일-가족 양립정책(WFB)은 구별된다.

Chart 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cash, services and tax breaks



Note: The definition of public support used here only concerns public support that is exclusively for families (e.g. child payments and allowances, parental leave benefits and childcare support). Spending recorded in other social policy areas as health and housing support also assists families, but not exclusively, and is not included here.

Source: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서구국가 중심의 복지국가 논의에는 남녀 임금차이가 크지 않고, 자영업 비중이 높지 않은 노동시장의 특성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남녀 간 임금차이가 크고 자영업과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2008년 현재 한국의 남성대비 여성임금비(62%)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성이 취업을 포기하여도 기회비용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07년 임금계층별 임금근로자 분포를 보면, 여성의 거의 절반(48%)이 150만원 미만 임금구간에 속하고(남성은 21%), 200만원 이상의 임금구간에 속하는 여성은 30%가 안 된다(남성은 65%). 따라서 여성의 임금차별을 줄여 비취업 시의 기회비용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취업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가 적어야 노동시장에 머무를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⁹⁾.

2008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30.44%가 비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고, 그 중 88.4%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임금근로자의 57%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9) 물론, 임금이 높아져도 여가가치를 더 중시하는 선택을 하면,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다(남성은 35%).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취업의 질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한국 기업의 영세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10인미만 영세사업체수의 비중이 60%미만이고, 영국과 독일이 70%전후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를 넘는다(이병희 외, 2009). 더 중요한 문제는 10인미만 영세사업체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1999	704,125	1,268,197	1,274,061	982,877	266,554	974,120	5,469,934
2000	841,296	1,397,497	1,373,187	961,536	286,489	875,017	5,735,072
2001	914,941	1,517,580	1,454,926	1,010,669	318,659	934,140	6,150,915
2002	946,498	1,513,317	1,463,849	1,087,057	363,889	1,063,070	6,437,680
2003	1,032,187	1,588,622	1,469,647	1,024,875	320,640	943,576	6,379,547
2004	1,031,302	1,584,950	1,492,018	1,037,491	352,189	952,613	6,450,563
2005	1,036,246	1,597,928	1,513,746	1,053,898	353,159	955,361	6,510,338
%변화	47.2%	26.0%	18.8%	7.2%	32.5%	-1.9%	19%

주: %변화는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의 고용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이 업체들은 영세한 매출규모로 혁신역량이 미미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생성과 소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영세사업체는 숙련형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근속에 대한 유인이 낮고 자발적 이직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노동 상승이동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기업규모별 고용분포를 보면 편포가 확인된다. 30인미만 사업장에 여성은 60.4%, 남성은 49.9%가 분포되어 있다.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1~4인	1,562,618 (17.2)	1,684,628 (26.0)	3,247,246 (20.9)
5~9인	1,205,029 (13.2)	1,038,955 (16.1)	2,243,984 (14.4)
10~29인	1,775,504 (19.5)	1,181,407 (18.3)	2,956,911 (19.0)
30~49인	863,143 (9.5)	618,915 (9.6)	1,482,058 (9.5)
50~99인	944,692 (10.4)	701,875 (10.8)	1,646,567 (10.6)
100~299인	1,065,112 (11.7)	552,891 (8.5)	1,618,003 (10.4)
300~499인	417,285 (4.6)	213,331 (3.3)	630,616 (4.1)
500~999인	387,641 (4.3)	183,108 (2.8)	570,749 (3.7)
1,000인 이상	878,324 (9.7)	295,231 (4.6)	1,173,555 (7.5)
전 체	9,099,348 (100.0)	6,470,341 (100.0)	15,569,689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이병희 외(2009)의 이행률 분석에 따르면, 10인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들의 미취업으로의 이행률이 매우 높는데, 특히 여성과 저학력층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 전국의 20~54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욕구조사결과(N=2,977), 노동시장 복귀 시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정규직 취업, 그 다음이 자영업자·고용주로 조사되었고, 평균희망 임금은 월 151만원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수입, 근로조건, 업무내용이 맞지 않아 일자리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진 외 2008). 따라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취업유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성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일자리의 적절한 질이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언급되는 사회서비스업은 지난 사년간 매출액과 고용모두 증가추세에 있어서 성장가능성이 부각되는 분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고학력 비취업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경력사 다리가 있는 직종으로 개발하여 경력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para-professional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오히려 취업준비를 위한 투자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국은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한 조치만 있으면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불안정성, 영세 사업장의 증가 및 여성편포 등 유급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취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상승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적 특성으로 **자녀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가구생산의 하나인 아동교육이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다. 중산층 이상 기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몰두하면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자녀교육 유인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다(최형재 2008). 이러한 상황은 동질혼(homogamy)의 강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동질혼이란 동일한 범주 내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 연령 범주 등에서 유사한 사람들 간의 결혼을 의미한다(이여봉 2008). 이 중에서도 교육수준과 인적자본(생산성)이 유사한 사람들 간의 결혼은 후기산업사회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가구 간 소득의 차이, 교육투자의 차이로 확대된다(에스핑엔더슨 2009).

흔히 가족에 대한 신고전이론은, 가정생산과 시장생산에서 전문화(특화; specialization)를 달성하는 데 결혼이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서 시장생산에서 우위를 점하는 남편이 유급노동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부인이 무급노동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가정 내 전문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전후(戰後) 경제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같거나 높아진 서구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임금차별이 거의 사라진 북유럽에서는 더더욱 유용성이 낮다. 그러나 임금차별이 높은 한국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에 따라 아직도 무급노동으로 전문화를 피하려는 기혼여성이 존재하게 된다.

아울러,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교육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간투자가 중요해진 교육여건 하에서 질 높은 자녀교육 지원은 가정생산의 핵심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고품질의 자녀양육에 대한 과잉투자가 중상층을 넘어 대부분의 계층에게 규범화 되면서 자녀가 사치재가 되어 버렸다는 우려까지 나

오고 있다¹⁰⁾. 이는 **도구주의적 가족주의**(instrumental familialism)에 의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기혼여성,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자동화 기기의 도움으로 가정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수 있었던 서구와 달리, 일상적 가사시간이 줄었다 해도 자녀교육이라는 다른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정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결국,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의 축소는 교육정책으로서의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이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점¹¹⁾을 상기한다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challenging한 과업임에 분명하다. 복지국가도 cash와 income maintenance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의 틀에서 벗어나, 시간정책(time policy)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일-가족 양립,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은 시간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시간부족 문제를 해소·경감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은 여성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정책지향의 요소: 유형과 선택

여성은 균질적 집단이 아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질적이고, 이질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Hakim(2000)이 분류한 여성의 **일-생활 선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Warren(2003)의 통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자녀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조기교육비용 지출과 좋은 학군지역 이동에 따른 주거비용 등을 높여 중산층 가정의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11)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노동시간은 2,38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작은 네덜란드(1,312시간), 독일(1,360시간), 프랑스(1,360시간)의 181%, 175%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여성의 일-생활 선호(21세기)

home-centered	adaptive(ambivalent)	work-centered
보통 20%, 국가별로 10~30% 격차	보통 60%, 국가별로 40~80%	보통 20%, 국가별로 10~30%
일생동안 자녀와 가족이 주요 우선순위	다양: 일과 가족을 항시적으로 병행하려는 여성부터 계획하지 않은 취업이나 노동시장 퇴장과 재업적이 잦은 여성까지 포함	무자녀 여성 다수; 인생의 주요 우선순위는 고용, 정치 등 사회활동
비취업 선호	취업을 희망하나 경력에 주력하지는 않음	취업에 몰입
지적인 주부의 역할 수행	취업을 위해 교육과 자격취득	교육과 자격취득 등에 높은 투자
자녀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음	고용정책, 캠페인, 경제여건, 기회균등 정책 등에 매우 반응적	기회균등 정책 등에 영향받음
고용정책에는 반응 없음	소득세, 사회복지급여, 교육정책, 보육서비스, 취업모에 대한 사회인식 등에 영향 받음	가족정책에는 반응 없음

Hakim(2000) p. 158

가정중심적(home-centered) 여성은 생애의 주된 우선순위는 결혼과 모성이며,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만 유급노동에 종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연령층에서는 현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력중심적(work-centered) 여성은 자신의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경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를 가진다. 적응형(adaptive) 여성은 양극단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여성으로 생애고용을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여성이다. 소위 일과 가족을 병행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다양한 공공정책의 유인책과 동등기회정책, 기회비용, 조세 및 소득조건의 불이익, 고용변동, 일반인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한국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생활 선호유형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88년에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응답이 여성의 17.5%,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여성이 16.7%였는데, 2006년에는 각각 6.7%와 50.8%로 변화하였다¹²⁾. 이는 한국사회에서 home-centered 여성이 줄어들고, work-centered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12) 남성의 10.9%는 여전히 여성이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남녀 간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의 여성이 정책반응성이 상이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야하는 정책영역인 저출산 대책과 여성고용촉진을 통한 맞벌이 가구 지원은 target 층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세심한 정책설계와 집행이 요구된다.

한편, 세 가지로 나타나는 여성의 선호가 영구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수준의 선호변화는 정책지원과 사회적 가치 및 태도 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즉, 양육기 여성의 전일제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및 조세정책이 강력히 시행될 경우, adaptive 여성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국가정책의 지향점과 연결되어 있다.

정책지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돌봄 문화**로는 Hochschild(2003)의 4가지 이념형적인 유형이 대표적이다. Hochschild는 “전통적 모형(traditional model)”, “후기-현대적 모형(post-modern model)”, “냉혹한 현대모형(cold modern model)”, “따뜻한 현대모형(warm modern model)”을 구분했다.

가. 전통적 모형: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모형이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은 흔히 자연스럽게 큰 노력이 필요 없다고(natural and effortless) 간주된다.

나. 후기-현대적 모형: 취업주부가 다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급노동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형이다.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취업주부에게는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협조하는 남편과 부모에게 유용한 노동시간 조정이 모두 없다. 한편으로는 유급과 무급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돌봄의 표준이 낮게 설정되기도 한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Hochschild는 이를 “지체된 젠더혁명(stalled gender revolution)” 현상으로 불렀다.

다. 냉혹한 현대모형: 일년 내내 자녀는 보육시설에, 노부모는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가족의 돌봄 공유가 거의 없는 모형이다. 노동시장설에,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가정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은 크게 줄어든다. 누군가를 돌보는 부엌고,없는 상태를 추양하는 다양한 책들고,출간되고, “아이가 집설에혼자 있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라는 책의 제목에서 엿모형이다.듯고,돌봄과 가족의 시간고,중요성을 잃고 있는

사회가 이설에해당한다. 야간 보육과 주중 연속 보육 등도 생겨나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피용인은 주말 내내 |수겔나 생체리듬설에맞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설에,한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유급노동을 위해 가족영역을 축소·포기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따뜻한 현대모형: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화된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동시에 남-녀가 사적인 돌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모형이다. 공공분야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모형은 “현대”라고 불리는데, 모든 돌봄을 가족 밖으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리고 가족에게 남아있는 돌봄 기능을 남-녀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이며, 돌봄을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후기-현대적 모형이나 냉혹한 현대모형과 대조된다.

각 모형은 이념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선택과 정확히 합치하지는 않는다. 각 모형은 돌봄에 대한 개념, 돌봄 제공자에 대한 생각, 어떤 돌봄이 충분히 좋은 것인가에 대한 관념 등이 각각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데, 결국 Hochschild는 따뜻한 현대모형을 바람직한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가족의 돌봄 기능이 살아있고 유대가 지켜지며 더 이상 여성에게만 강요되지 않는 그러한 모형을 강조한다. 실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가족 내의 공유, 직장의 변화와 노동시간 조정, 돌봄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이 따뜻한 현대모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Hochschild 모형의 함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되, 아래에서 살펴 볼 Kremer(2007)의 유형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추구할 모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여성의 취업은 복지국가가 기초로 삼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성평등 및 독립성¹³⁾ 강화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으로는 열악한 연금급여수준을 높이고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화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성인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라는 두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정책 틀을 구축해야 한다¹⁴⁾. 여성의 고용을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인가? 고용을 제고의 동전의 양면인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둘러싼 정책의 option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수행의 이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성평등이라는 정책의 지향까지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특징이 도출된다.

여기서 전일제 어머니 모형은 여성고용 증진과의 친화력이 전혀 없는 모형이다. 부모 공유 모형은 돌봄과 여성고용을 일정하게 타협적으로 수행하는 모형으로서 여성고용이나 소득에는 중간정도의 친화력을 갖지만, 돌봄수행을 둘러싸고 남녀 간의 평등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3세대 돌봄 모형은 어머니가 아닌 조모세대를 돌봄수행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모형으로, 어머니 세대의 고용에는 친화적이지만, 그 윗세대 여성의 고용에는 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친부모 양육을 벗어난 모형 중에서 돌봄수행에서 가장 전문성이 떨어지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돌봄 모형은 부모 모두의 고용과 친화력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인력(예: 전문 보육교사)에게 돌봄수행이 맡겨지는 모형이다. 만일 맞벌이 가구 지원을 핵심 목표로 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모의 돌봄관련 걱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가 돌봄모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양육대리자 모형은 전문가 돌봄 모형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에 의해 수행되며, 어머니의 고용에는 친화성이 높지만, 준전문가인 보모에게는 낮은 소득이라는 영향을 주게 된다.

13) 여성의 남성임금 의존성을 낮추고, 독립가구 형성을 지원하는 이념과 연결된다.

14) 여성고용권의 장려와 임금차별의 해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예방에도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근로인구가 늘어날수록 조세수입 증가,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 유지, 공적부조 지출절감, 노후빈곤 방지 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돌봄수행의 이념형과 시민권으로서의 여성고용¹⁵⁾

	full-time motherhood	parental sharing	intergenerational care	professional care	surrogate mother
돌보는 자	어머니	부모	조모	전문가(남,녀)	보모 (준 전문가)
장소	가정	가정	가정	가정 외(기관)	가정, 유사 가정
여성고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낮음	경력단절 가 능성; 높은 시 간제 근무형태	어머니에게는 높고, 조모에게 는 낮음	높은 전일제 근무형태	중간
여성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	낮음	중간수준	어머니에게는 높고, 조모에게 는 낮음	높음	어머니에게는 높고, 보모에게 는 낮음
돌봄참여 특성	여성참여 고 남성참여 저	여성남성 모두 중간	어머니세대는 낮고 조모세대 는 높음	부모참여 낮음	보 모 에 게 는 높고, 부모에게 는 낮음
전통적 성별 분업 극복가능성	없음	있음	mixed	있음	없음

Kremer(2007) p.228

4. 정책과제

1) 앞의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보육서비스와 노인요양이나 간병서비스 수행인력의 전문성으로 연결되며, 서비스의 품질과도 직결된다. 핵심서비스인 **보육서비스**에서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질(quality)이 관건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교사-아동비율과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근로조건과 적정 보상수준 확보를 통한 교사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시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호봉체계, 초과근무, 법정휴가 및 보수교육 등 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에 따르면, 보육제도는 다음의 네 가지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어머니 양육모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서비스 경제의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②보다 평등한 기반 위에서 일과 가정의 책무를

15) 두 번째 이념형은 일가족 양립정책 중 부모 모두가 휴직을 사용하거나, 부모 모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이념형은 일가족 양립정책 중 전문가에 의한 기관보육정책이 정합성이 높은 모형이다.

조화시켜야 하는 필요성 ③출산률 하락 ④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 아울러, 보육서비스는 이용하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아동의 일반적 건강수준 향상, 아동의 기초역량(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 미래 교육성취 밑거름, 사회적 결속 등에 기여하는 외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육의 질을 규정짓는 요소에는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교직원의 질적 수준과 훈련 수준, 적절한 아동 대 교사 비율,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보상제도가 속한다. 이 중에서 2004년 이후 제도정비를 통해 한국에서 일정정도 성취된 부분은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에 불과하며, 영아반만 아동 대 교사비율 정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직원의 질적 수준과 훈련 수준,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보상제도는 미결 과제인 셈이다. 앞으로 법령에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자격, 경력, 호봉, 직책수당 등을 명시하고 보수교육을 전문화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1년 양성과정을 마치고 바로 보육교사가 되고¹⁶⁾ 승급도 수월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1급 보육교사는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2급 보육교사가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가정 내 케어를 대체 할 professional care의 기초에 해당한다. 사회화된 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잠재적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고용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의 자격 강화(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자 및 자격취소자 배제), 자영업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운영모형 다각화, 맞벌이 부부의 입소우선순위 불이익 제거, 평가인증의 의무화 혹은 인증결과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차등화를 통한 품질 관리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료상한제를 폐지하지는 주장도 존재한다. 보육료상한제 때문에 보육의 질에 하향평준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이 보육료 액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당장 상한제 폐지를 시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 개인시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격없는 교

16) OECD에서 가장 짧은 양성기간임.

시를 활용하거나, 낮은 품질의 식단을 제공하거나, 부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ker 1991, Hansmann 1996; 김혜원 외 2006 재인용). 상한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표준보육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상한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면서 동시에 평가인증제를 강화하여 일정한 품질의 공급자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투자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낮은 품질의 공급자가 시장에 유입되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cost를 매우 높여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보육기관을 이용한 보호자의 불만족 사유 1위는 비용이 비싸다(49.3%)는 응답이었다(2008 한국의 성인지 통계). 따라서 즉시 보육료상한제를 풀어서 보육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 또 다른 비용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부터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이 실시되었으므로, 다양한 보육시설의 운영정보를 모니터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를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여성은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인적자본의 마모가 발생하거나 하향 재입직을 하게 되어 잔여 근로기간동안 임금손해를 보게 되며, 경력관리에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를 둔 부모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영아보육시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초과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유아보육시설을 영아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아울러, 현행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체계와 병행하여, 맞벌이 가정의 이용 우선 순위 부여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에서의 부부소득 합산으로 발생하는 penalty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 2) 모든 여성이 전일제 근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 양육기의 여성 중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여성이 많을 수 있다. 한국은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시간제 고용이 덜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양성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시

간제 근로는 차별만 없다면 일-가족 양립의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EU 2003; ILO 2007). 특히 양육기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여성의 단시간근로 전면화(=1.5모델)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의 전일제근로를 가로막는 방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차별 없는 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여성에게만 사용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영국은 이미 단시간근로가 광범위하게 여성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유연 근로제를 늘려가고 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산·양육기)여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만 실시되고 있는데, 기혼여성에게만 단시간근로가 집중되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최은영 2007).

우선, 각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명목만 시간제로 구분하고, 초과근무를 통해 전일제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여성에게만 시간제를 장려하는 경우(일본) 보다는 남녀 모두의 시간제 근로를 장려하는 경우(네덜란드)가 더 바람직하다. 여성에게 영구적으로 부차적인 소득자로서의 역할만 강조되는 1.5 소득자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비자발적 시간제는 줄이고 자발적 시간제를 증가시켜야 한다. 동일하게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 시간제가 높은 나라와 비자발적 시간제가 높은 나라의 시간제 근로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은 매우 다르다.

넷째,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 비례형 임금(과 사회보장 급여) 및 취업훈련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당 및 급여 등 제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시간제보다 일자리 공유(job sharing)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2-3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하나의 일자리를 공유하되, 급여와 모든 수당 등을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다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

다. 이렇게 되면,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ing hours)가 반드시 시간제 일자리(part-time job)를 의미하지는 않게 된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 유급노동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는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본인이 원할 때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는 등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노동시간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현재 노동시장에는 낮은 교육수준, 저숙련 근로자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교육수준이 높아진 근로자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을 예측할 때, 준 전문가 일자리 양산보다는 전문가 일자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은 여성고용의 잠재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인력양성 및 배치기준**으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유인이 전무하다. 따라서, 저숙련 중심으로 배치기준이 마련된 각종 복지시설과 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 추가유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서비스 질 제고 및 여성취업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근로자지원제도(EAPs)를 담당할 요원 양성체계를 검토하여 사업체가 집중 위치한 공단지역부터 시범사업 적용하여 산업복지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정책의 대상을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성과 부모로 확장하여, 남성의 부성권 강화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도입,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 돌봄부담을 모두 사회화하지 못한다면(혹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맞벌이 유지를 위해서는 **가구 내 역할공유**가 미시적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취업의 증가라는 후기산업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남성의 변화¹⁷⁾가 수반되지 않으면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일 수 밖에 없고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새로운 평형(stable new equilibrium)을 찾을 수 없다(Esping-Andersen, 2009). 실제로 남성이 어떠한 적응방식과 역할변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남녀 간 생애주기별 생활패턴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한 사회의 여성취업률과 이인생계부

17) 에스핑 앤더슨은 이를 남성 생애의 여성화(feminization of the male life course)라고 칭한다(에스핑앤더슨 2009:81).

양자 가구의 비중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혼 남성과 여성이 맞벌이 일 때 가사노동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취업여부별로 미혼은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진다 (여성 4시간 15분 vs. 남성 34분). 이는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단위: 시간:분)

	1999		2004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미혼	0:19	0:32	0:18	0:42
기혼	0:32	4:31	0:34	4:15
미취업	-	5:48	-	5:29
취업	-	3:15	-	3:01

주: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KOSIS

따라서 아이낳기 캠페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가사 및 육아의 공평한 분담** 및 가족친화경영 캠페인이어야 한다.

- 5)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혹은 국가 대납**이 필요하다. 사업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 비공식고용을 줄이고 공식고용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현 근로자의 노후 연금수급 가능성과 수급액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 돌봄노동 부담(아동, 장애인, 노인, 질환자)에 따른 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respite service 활성화**
- 7)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성별분업의식에서 벗어난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시점에서는, 유족연금 등의 파생수급권 보다는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변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근로소득

에 근거하여 받는 급여보다 본인의 노동시장 근무를 준거로 받는 연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 EITC 의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기준은, 여성의 노동공급 혹은 노동시간 확대에(특히 secondary earner 일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조선주 외 2008),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는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맞벌이 가구 여성이 근로장려세제 적용이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는 오히려 동일 특성의 여성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었다. 앞으로 가구특성을 세분화하거나 개인단위 소득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9) 맞벌이 가구가 중산층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권의 확보와 더불어 **가계지출 부담경감** 방안도 중요하다.

- 의료비 긴급지원 보다는, 건강보험에서 가구소득별 본인부담을 차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필수적 고정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중산층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 필수재 성격이 강한 주거 분야에서도 동일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기초의 급여를 개별수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구별 특성에 맞게 일부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맞벌이 지원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credit 인정** 방안을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예) 양육크레딧)
- 위기 시 안전망 작동범위 확대하기: **고용보험에 특정소득이하 자영업주를 포함**하고 일반조세를 투입하여 직업능력 및 실업수당의 수혜자격 부여하거나 장기적으로 실업부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 고려사항

* target 층(저소득 홀벌이 가구)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종사상 지위, 건강상

태 등을 확인하여 세부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저소득 홀벌이 가구의 배우자가 snap shot에서는 비취업으로 잡히더라도 실업-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계층이거나 비공식 고용 상태라면, 단순한 취업유인 설정만으로 안정적인 맞벌이를 육성(하고 가구소득을 증가시킬)할 수는 없다.

- * 맞벌이 빈곤가구 규모 확인 및 대책은 별도로 필요하다. 맞벌이가 모두 비빈곤 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 * 장기적으로는, 돌봄과 유급노동을 둘러싼 부모의 생애주기별 선호(preference)에 대한 전국 조사나 대규모 심층면접 등의 태도관련 survey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기존의 한국복지는 남성 일인소득자 모형(male breadwinner model)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극빈층, 즉 비노동 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와 남성전일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빈민의 양산과 비정형근로(non-standard work)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제도 개혁, 가족의 구조변화 및 기능의 약화, 인구구조의 변동 등 다양한 압력요인으로 인해 기존 복지의 틀이 취약해 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복지국가는 양육과 요양을 포괄하는 돌봄노동(care-work)에의 국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덧붙여, 의존인구의 증가, 보살핌의 공백, 노동시장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복지국가에 던지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돌봄노동에의 개입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두 노동영역(즉,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사적 영역(private sphere)으로 간주되었던 가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복지개입의 영역확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지원(여성취업 촉진) 프로그램 역시, 기존 복지 자본주의의 제도적 토대였던 표준적 남성노동자와 생계부양자를 보호하는 목표를 벗

어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은 취업의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적 지원, 노동시장의 일자리 공급, 임금차별 최소화, 모성성과 노동성의 동시 강조, 가정 내 남녀간 역할 공유 등이 모두 결합되어야만 성취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과 더불어 여성의 전일제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이인소득자 모형을 지향할 것인지(돌봄서비스의 사회화 필요; 보육서비스의 중요성 절대적),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을 적절히 결합하여 1.5모델을 지향할 것인지(시간제 노동과 휴가권 강화를 통한 순차적 양립 강조),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 내 돌봄에 동시에 참여하는 독특한 형태의 모형으로 나아갈 것인지(예: 네덜란드)를 둘러싸고 다양한 선택 역시 가능하다.

노동권이 중요한 사회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취업이 강요되거나 비취업에 penalty가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target 층의 연령, 가구주 종사상 지위 및 건강상태 등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과 가구의 선호와 선택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맞벌이가구를 적극 지원하거나 우대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 장기적으로 맞벌이가구 확대가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취업계약요인이 높은 가구는 이중차별을 겪을 우려가 높으므로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대상에게 사회서비스로 취업을 지속하여 지원 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장애가 높은 저학력 고연령층의 훈련을 강화하면서 수당이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임금차별을 축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취업인센티브를 크게 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 보다, 제도 간 정합성과 상보성을 점검하고 꾸준한 추진을 통해 target population에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도의 난립은 국민들에게 mixed signal을 주게 되고, 의도한 결과를 거두기 힘들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아울러, 복잡한 사회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구조를 짚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담당 부서 태두리를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최근 정책사례

(중산층 육성보호나 근로가구 지원의 성격)

뉴질랜드(2004) Working for Families Package - tax credit 방식의 취업유인 제공. 근로빈곤 문제에 착안.

호주(2008) Working Families Support Package - 근로유인 제공, 주택 및 의료분야 비용 절감 및 지원, 감세 등 종합적.

미국(2009)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Helping Middle-Class Families - 맞벌이나 여성노동 언급 없음. 현금 및 다양한 tax credit 위주의 지원,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취업유지 포함. emergency package로서의 기능 위주.

* 뉴질랜드

- 유급노동과 가족돌봄 동시수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패키지.
- 4가지 tax credit을 통해 \$70,000이하 유자녀 가족 거의 대부분에게 추가 소득효과 유도: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parental tax credit
- earner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님. 수혜자격기준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

※ 특징

- ① 근로병행 급여(in-work payment: IWP)를 늘려 고용상태를 유지할 때 생기는 효용과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상함(근로자의 의중임금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
- ② 취업선택은 객관적 제약조건 외에도 부모의 주관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취업 시 net return이 높아지도록 설계함.

* 호 주

- 물가상승과 생활비 지출증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근로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정책구성
 - 세제 지원 및 물가상승 억제: 조세감면을 통해 근로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
 - 돌봄 및 교육지원: 보육시설을 늘리고 교육세 환급(초중고) 및 보육비용에 따른 세감면 확대. 아동돌봄 수행자(carer) 수당 수급자 확대 및 일괄 급여 보너스로 지급.
 - 건강지원: 고비용으로 이용이 억제되는 치과진료에 공공자금 투입(10대 자녀), 본인부담금에 소득계층별 차별 적용.
 - 주거지원: 주택공급 확대, 특정 unit을 저소득층에게 분양,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금융지원.
- ※ 특징: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특별 급여체계라기 보다는 종합적 복지사업안 내의 성격

* 미 국

- 2009년 이후 생산가능연령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ARRA법 제정, 787억달러 패키지 마련. 2009년 2월 의회통과.
- 정책1: 일자리 창출과 유지
- 정책2: 직간접적으로 가족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급여제공(아래의 정책으로 중산층 가구소득을 2.3% 상승할 것으로 기대)
 - tax cut을 통해 세후소득 증대효과 유도
 - SNAP(전 food stamp) 확장
 - 실업보험 확대, 실업 시 의료보험 유지지원
- 정책3: lifting the wages
 - 경제성장의 열매가 상위계층에게 집중 유입될 경우 국가전체의 평균소

득은 올라가겠지만, 중산층의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계층별 임금성장에 대한 장기자료 분석, 80년대 이후 중위소득자의 임금상승이 생산성증가의 25%에 불과함을 발견함. 이는 불평등과 연결되는 쟁점으로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

- 정책4: 다양한 tax credit 시행, 확대

- Making Work Pay tax credit: 유자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EITC 확장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시행: 자녀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년 동안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미래 중산층 유입을 기대(중산층 토대 마련)

⇒ 네 가지 정책을 합하면, 가구의 spending을 높이고, 내수 진작의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특징

- ① earner의 수와 무관하게, 자녀중심의 설계임.
- ② 실업을 해도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도임.

참고문헌

- 장신옥 외, 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의 구성,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장신옥, 맞벌이 지원대상 가구의 규모 및 실태, 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10.
- 김혜원·안상훈·조영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보건복지가족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2009.
- 오은진 외,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이병희 외,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이여봉, 가족 안의 사회, 사회안의 가족, 양서원, 2008.
-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최은영, "OECD 주요국의 보육정책 동향과 함의" 장지연 외,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최은영, "보살핌노동과 젠더: 복지국가재편의 새로운 차원", 다케가와 외, 『복지국가레짐 한-일 비교』 일본: 동경대학교출판부, 2006.
- 최은영, "노동시간 관련 정책", 윤홍식 외,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넘어: 쟁점, 사례, 원칙과 방향, 진보정치연구소, 2007. pp.65-87.
- 최형재,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200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08.
- 홍승아 외,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Esping-Andersen, G. et al.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Esping-Andersen, G.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Press, 2009.
- EU. Working-time preferences and work-life balance in EU, 2003.
- Hakim, C.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Hochschild, A.R.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ILO. Decent Working Time: balancing workers' needs with business requirements, 2007.
- Kremer, M. How Welfare States Care: Culture, Gender and Parenting in Europe, Copenhagen: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7.
- Leira, A.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Cambridge, 2002.
- _____ "Updating the 'gender contract' childcare reforms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NORA, No.2 Vol. 10, 2002.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 I~IV, 2002~2005.
- OECD, Extending Opportunities, 2005.
- OECD, Starting Strong II, 2006.
- OECD, What Works Best in Reducing Child Poverty: A Benefit or Work Strategy?, 2007.
- Sainsbury, 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Taylor-Gooby, P.(ed.) New Risks, New Welf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Warren, Elizabeth et als. Two-income Trap: why middle-class mothers and fathers are going, 2003; 주익중 옮김, 맞벌이의 함정, 필맥. 2004.